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서 문.....	5
제 I 부 총 칙.....	7
제 II 부 영해와 접속수역.....	9
제1절 총 칙.....	9
제2절 영해의 한계.....	9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12
소절 A.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12
소절 B.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16
소절 C.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17
제4절 접속수역.....	17
제 III 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18
제1절 총 칙.....	18
제2절 통과통항.....	18
제3절 무해통항.....	21
제 IV 부 군도국가.....	22
제 V 부 배타적 경제수역.....	26
제 VI 부 대륙붕.....	37
제 VII 부 공 해.....	41
제1절 총 칙.....	41
제2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49
제 VIII 부 섬제도.....	52
제 IX 부 폐쇄해·반폐쇄해.....	53
제 X 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와 자유.....	54
제 XI 부 심해저.....	56
제1절 총 칙.....	56
제2절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56
제3절 심해저자원 개발.....	61
제4절 해저기구.....	68
소절 A. 총 칙.....	68
소절 B. 총 회.....	69
소절 C. 이사회.....	71
소절 D. 사무국.....	80
소절 E. 개발청.....	82
소절 F. 해저기구의 재정.....	82
소절 G. 법적지위, 특권·면제.....	83
소절 H.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	85

제5절 분쟁해결과 권고적 의견	86
제XII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89
제1절 총 칙	89
제2절 지구적·지역적 협력	90
제3절 기술지원	91
제4절 감시와 환경평가	92
제5절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93
제6절 법령집행	97
제7절 보장제도	102
제8절 결빙해역	105
제9절 책 임	105
제10절 주권면제	106
제11절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106
제XIII부 해양과학조사	107
제1절 총 칙	107
제2절 국제협력	107
제3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과 촉진	108
제4절 해양환경내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	113
제5절 책 임	114
제XIV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115
제1절 총 칙	115
제2절 국제협력	116
제3절 국내·지역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17
제4절 국제기구간 협력	118
제XV부 분쟁의 해결	119
제1절 총 칙	119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120
제3절 적용의 제한과 예외	124
제XVI부 일반규정	128
제XVII부 최종조항	129
제I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135
제II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136
제III부속서 개괄탐사, 탐사및 개발의 기본조건	139
제IV부속서 개발청(開發廳) 정관	161
제V부속서 조 정	170
제1절 제XV부 제1절에 따른 조정절차	170

제2절 제 X V 부 제3절에 따른 조정절차에의 강제회부	172
제 VI 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173
제1절 재판소의 조직	173
제2절 권 한	178
제3절 절 차	178
제4절 해저분쟁재판부	180
제5절 개 정	182
제 VII 부속서 중재재판	183
제 VIII 부속서 특별중재재판	187
제 IX 부속서 국제기구의 참여	190

서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또한 세계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평화·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써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

1958 년과 1960 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 이래 진전이 새롭고도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해양법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해양의 여러 문제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제 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의 달성이 인류 전체의 이익과 필요, 특히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 없이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이익과 필요를 고려한 공정하고도 공평한 국제경제질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총회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 지역은 그 자원과 함께 인류 공동유산이며, 이에 대한 탐사와 개발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특별히 엄숙하게 선언한 1970년 12월 17일자 결의 제 2749(XXV)호에 구현된 여러 원칙을 이 협약에 의하여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이 협약이 이룩한 해양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이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간에 평화·안전·협력 및 우호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증진할 것임을 믿으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에 의하여 계속 규율될 것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I 부 총 칙

제1조 [용어의 사용과 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1) "심해저(Area)"라 함은 국가 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2) "기구(Authority)"라 함은 국제해저기구를 말한다.

(3) "심해저 활동(activities in the Area)"이라 함은 심해저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해양환경오염(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이라 함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5) (a) "투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i)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ii)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b) "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i)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의 통상적인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폐기. 단,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버릴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이것에 의해 운송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이러한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 해양구조물에서 이러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제외

(ii) 이 협약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단순한 폐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유치

2. (a)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기속받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b) 이 협약은 제 305 조 제 1 항 (b), (c), (d), (e) 및 (f)에 해당하는 주체로서 각기 관련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주체에 대하여 준용되며 그러한 경우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주체를 포함한다

제 II 부 영해와 접속수역

제1절 총 칙

제2조 [영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1.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 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2. 이러한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3.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2절 영해의 한계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영해의 바깥한계]

영해의 바깥한계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제5조 [통상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제6조 [암초]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영해기선'이라 함)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제7조 [직선기선]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영해기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 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후 저조선이 후퇴하더라도 직선기선은 이 협약에 따라 연안국에 의하여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직선기선 안에 있는 해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4. 직선기선은 간출지(干出地)까지 또는 간출지(干出地)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干出地)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출지(干出地)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 1 항의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제8조 [내수]

1. 제Ⅳ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국가의 내수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 7 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경우, 이 협약에 규정된 무해통항권이 그 수역에서 계속 인정된다.

제9조 [하구]

강이 직접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 기선은 양쪽 강둑의 저조선상의 지점을 하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0조 [만]

1. 이 조는 그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협약에서 만이라 함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인 뚜렷한 만입(灣入)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한 선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만입은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측량의 목적상 만입면적이라 함은 만입해안의 저조선과 만입의 자연적 입구의 양쪽 저조지점을 연결하는 선 사이에 위치한 수역의 넓이를 말한다. 섬이 있어서 만이 둘이상의 입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입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선의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인 선상에 반원을 그려야 한다.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4.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간에 그을 수 있으며, 이 안에 포함된 수역은 내수로 본다.
5.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거리가 24 해리를 넘는 경우, 24 해리의 직선으로서 가능한 한 최대의 수역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만안에 24 해리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
6. 전항의 규정들은 이른바 "역사적" 만에 대하여 또는 제 7 조에 규정된 직선기선제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항구]

영해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근해시설과 인공섬은 영구적인 항만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정박지]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제13조 [간출지(干出地)]

1. 간출지(干出地)는 썰물일 때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위에 노출되나 밀물일 때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간출지(干出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출지(干出地)의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간출지(干出地)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출지(干出地)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선결정 방법의 혼합]

연안국은 서로 다른 조건에 적합하도록 앞의 각 조에 규정된 방법을 교대로 사용하여 기선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제 7 조,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결정되는 영해기선 또는 그로부터 도출된 한계, 그리고 제 12 조 및 제 15 조에 따라 그어진 경계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또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소절 A.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17조 [무해통항권]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제18조 [통항의 의미]

1. 통항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영해를 지나서 항행함을 말한다.

(a) 내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횡단하는 것, 또는

(b)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는 것

2. 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다만, 정선이나 닻을 내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는 경우,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통항에 포함된다.

제19조 [무해통항의 의미]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다음의 어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 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b)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c)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e)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f) 군사기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g)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이나 하선

(h)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i) 어로활동

(j)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k)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

제20조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1. 연안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a)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b) 항행보조수단과 설비 및 그 밖의 설비나 시설의 보호

(c) 해저전선과 관선의 보호

- (d)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 (e) 연안국의 어업법령 위반방지
 - (f) 연안국의 환경보전과 연안국 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 (g)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측량
 - (h)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2. 이러한 법령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나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외국선박의 설계, 구조, 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안국은 이러한 모든 법령을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
 4.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법령과 해상충돌 방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모든 국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영해내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1.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통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로대와 규정된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특히 유조선, 핵추진선박 및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이나 재료를 운반중인 선박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연안국은 이 조에 따라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권한있는 국제기구의 권고
 - (b) 국제항행에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로
 - (c) 특정한 선박과 수로의 특성
 - (d) 선박교통량
4. 연안국은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도에 명시하고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제23조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또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제24조 [연안국의 의무]

1. 연안국은 이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연안국은 이 협약이나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행하지 아니한다.

(a)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의 부과

(b) 특정국의 선박, 또는 특정국으로 화물을 반입·반출하거나 특정국을 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제25조 [연안국의 보호권]

1.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항행하거나 내수 밖의 항구시설에 기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박이 내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항구시설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3. 연안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외국선박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1.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2. 수수료는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그 선박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차별없이 부과된다.

소절 B. 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7조 [외국선박내에서의 형사관할권]

1. 연안국의 형사관할권은 오직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내에서 통항중에 발생한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선박내에서 행사될 수 없다.

(a) 범죄의 결과가 연안국에 미치는 경우

(b) 범죄가 연안국의 평화나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인 경우

(c)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가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d)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의 규정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의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 연안국은 선장이 요청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이를 취하기 전에 선박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통고하고, 이들과 승무원간의 연락이 용이하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통고는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현지당국은 체포여부나 체포방식을 고려함에 있어 통항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5. 제 12 부에 규정된 경우나 제 5 부에 따라 제정된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 위하여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제28조 [외국선박과 관련한 민사관할권]

1.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

2.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연안국 수역을 항행하는 동안이나 그 수역을 항행하기 위하여 선박 스스로 부담하거나 초래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없다.

3. 제 2 항의 규정은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소절 C.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적용되는 규칙

제29조 [군함의 정의]

이 협약에서 "군함"이라 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제30조 [군함의 연안국 법령위반]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군함에 대한 연안국의 법령 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의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책임]

기국은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또는 이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입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진다.

제32조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

소절 A, 제 30 조 및 제 31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접속수역

제33조 [접속수역]

1.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서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a)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b)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2.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 해리 밖으로 확장할 수 없다.

제III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제1절 총 칙

제34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의 법적지위]

1. 이 부에서 수립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항제도는 이러한 해협을 형성하는 수역의 법적지위 또는 그 수역과 그 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해협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협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은 이 부와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제35조 [이부의 적용범위]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제 7 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종전에는 내수가아 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는 곳을 제외한 해협안의 내수의 모든 수역
- (b) 해협연안국의 영해 바깥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 가지는 법적 지위
- (c) 특정해협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항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해협의 법제도

제36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통한 공해 통과항로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안에 있는 경우, 이 부를 그 해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항로에 있어서는 통항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다른 관련 부를 적용한다.

제2절 통과통항

제37조 [이 절의 적용범위]

이 절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적용한다.

제38조 [통과통항권]

1. 제 37 조에 언급된 해협내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다만,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통과통항이라 함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에의 요건은 해협연안국의 입국조건에 따라서 그 국가에 들어가거나 그 국가로부터 나오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협통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해협의 통과통항권의 행사가 아닌 활동은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통과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1.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해협 또는 그 상공의 지체없는 항진

(b) 해협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 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의 자제

(c) 불가항력 또는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에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활동의 자제

(d) 이 부의 그 밖의 관련규정 준수

2. 통과통항중인 선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국제규칙을 포함하여 해상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

(b)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절차 및 관행의 준수

3. 통과통항중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한 민간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규칙 준수, 국가 항공기도 통상적으로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항상 비행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운항

(b) 국제적으로 지정된 권한있는 항공교통통제기구가 배정한 무선주파수나 적절한 국제조난 무선주파수의 상시 청취

제40조 [조사 및 측량활동]

해양과학조사선과 수로측량선을 포함한 외국선박은 통과통항중 해협연안국의 사전허가없이 어떠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제41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

1. 해협연안국은 선박의 안전통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부에 따라 해협내 항행을 위하여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2.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표한 후, 이미 지정되거나 설정되어 있는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다른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에 따른다.
4. 해협연안국은 항로대를 지정·대체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대체하기에 앞서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이를 채택하도록 제안한다. 국제기구는 해협연안국과 합의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 후 해협연안국은 이를 지정, 설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5. 2 개국 이상의 해협연안국의 수역을 통과하는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이 제안된 해협에 대하여는, 관계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의하에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6. 해협연안국은 자국이 지정하거나 설정한 모든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 도에 명시하고 이 해도를 적절히 공표한다.
7. 통과통항중인 선박은 이 조에 따라 설정되어 적용되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준수한다.

제42조 [통과통항에 관한 해협연안국의 법령]

1. 이 절의 규정에 따라 해협연안국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a) 제 41 조에 규정된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 (b) 해협에서의 유류, 유류폐기물 및 그 밖의 유독성물질의 배출에 관하여 적용하는 국제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 (c) 어선에 관하여서는 어로의 금지(어구의 적재에 관한 규제 포함)
 - (d) 해협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상품이나 화폐를 신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과 하선

2. 이러한 법령은 외국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된 통과통항권을 부정, 방해 또는 침해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3. 해협연안국은 이러한 모든 법령을 적절히 공표한다.

4.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한다.

5.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 또는 항공기의 등록국은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러한 법령이나 이 부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해협연안국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진다.

제43조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그 밖의 개선시설과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a)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또는 국제항행에 유용한 그 밖의 개선시설의 해협내 설치와 유지

(b)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제44조 [해협연안국의 의무]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권을 방해할 수 없으며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해협내 또는 해협상공에 있어서의 항행이나 비행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제3절 무해통항

제45조 [무해통항]

1. 제 II 부 제 3 절에 규정된 무해통항제도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다음 해협에 적용된다.

(a) 제 38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협

(b)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

2. 이러한 해협을 통한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다.

제Ⅳ부 군도국가

제46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에서,

(a) "군도국가"라 함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군도로 구성된 국가를 말하며, 그 밖의 섬을 포함할 수 있다.

(b) "군도"라 함은 섬의 무리(섬들의 일부를 포함), 연결된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으로서,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섬, 수역 및 그 밖의 자연지형이 고유한 지리적·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일체를 이루고 있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단일체로 인정되어 온 것을 말한다.

제47조 [군도기선]

1. 군도국가는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점을 연결한 직선군도기선을 그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선 안에는 주요한 섬을 포함하며 수역의 면적과 육지면적(환초 포함)의 비율이 1 대 1 에서 9 대 1 사이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선의 길이는 1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군도를 둘러싼 기선 총수의 3 퍼센트까지는 그 길이가 100 해리를 넘어 최장 125 해리까지 될 수 있다.

3. 이러한 기선은 군도의 일반적 윤곽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날 수 없다.

4. 이러한 기선은 간출지(干出地)와 연결하여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干出地)에 설치되어 있거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간출지(干出地)가 가장 가까운 섬으로부터 영해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6.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의 어느 일부가 바로 이웃한 국가의 두 부분 사이에 있는 경우, 이웃한 국가가 이러한 수역에서 전통적으로 행사하여 온 기존의 권리와 그 밖의 모든 합법적인 이익 및 관련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된 모든 권리는 계속하여 존중된다.

7. 제 1 항에 규정된 수역과 육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육지면적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암초와 환초 안쪽에 있는 수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급경사가 있는 해양고원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일련의 석회암섬과 드러난 암초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거나 거의 둘러싸인 수역도 포함할 수 있다.

8. 이 조에 따라 그은 기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한다. 이는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군도국가는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48조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의 측정]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제 47 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제49조 [군도수역과 그 상공·해저 및 하층토의 법적지위]

1.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깊이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제 47 조에 따라 그은 군도기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군도수역이라고 불리는 수역에 미친다.

2. 이러한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3. 이러한 주권은 이 부에 따라 행사된다.

4. 이 부에 따라서 설정된 군도항로대 통항제도는 다른 면에 있어서 군도항로를 포함한 군도수역의 지위 또는 군도수역, 군도수역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와 이에 포함된 자원에 대한 군도국가의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조 [내수의 경계획정]

군도수역에서 군도국가는 제 9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따라 내수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

제51조 [현행협정, 전통적 어업권과 기존해저전선]

1. 제 49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현행협정을 존중하고 군도수역의 일정한 수역에 있어서 바로 이웃한 국가의 전통적 어업권과 그 밖의 적법한 활동을 인정한다. 이러한 권리와 활동의 성질·범위와 적용지역 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조건은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그들 서로간의 양자협정으로 규율한다. 이러한 권리는 제 3 국이나 제 3 국의 국민에게 이전되거나 공유되지 아니한다.

2. 군도국가는 다른 국가가 부설한 기존 해저전선이 육지에 달지 아니하고 자국수역을 통과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군도국가는 이러한 전선의 위치 및 이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 의사를 적절히 통지받은 경우, 그 전선의 유지와 교체를 허용한다.

제52조 [무해통항권]

1. 제 53 조에 따르면 제 50 조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국가의 선박은 제 II 부 제 3 절에 따라 군도수역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2. 군도국가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선박간에 형식상 또는 실질상 차별하지 아니하고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는 적절히 공표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군도항로대 통항권]

1. 군도국가는 자국의 군도수역과 이와 인접한 영해나 그 상공을 통과하는 외국선박과 항공기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에 적합한 항로대와 항공로를 지정할 수 있다.

2.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에서 군도항로대 통항권을 향유한다.

3. 군도항로대 통항이라 함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느 한 부분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서 오로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적 방식의 항행권과 비행권을 이 협약에 따라 행사함을 말한다.

4.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는 군도수역 및 이와 인접한 영해를 횡단하는 것으로서 군도수역의 국제항행로 또는 그 상공비행로로 사용되는 모든 통상적인 통항로를 포함하며, 선박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통항로 안의 모든 통상적인 항행수로를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입구지점과 출구지점 사이에 유사한 편의가 있는 통로를 중복하여 둘 필요는 없다.

5. 이러한 항로대와 항공로는 통항로의 입구지점으로부터 출구지점까지의 일련의 연속축선에 의하여 정한다.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는 통항중 이러한 축선의 어느 쪽으로나 25 해리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선박과 항공기는 항로대에 접하고 있는

섬과 섬 사이의 가장 가까운 지점을 연결한 거리의 10 퍼센트 지점보다 해안에 접근하여 항행할 수 없다.

6. 이 조에 따라 항로대를 지정하는 군도국가는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7. 군도국가는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표한 후 이미 지정되거나 설정된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다른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을 따른다.

9. 항로대를 지정·대체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대체함에 있어 군도국가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제안을 회부하여 채택되도록 한다. 그 국제기구는 군도국가가 동의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만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후 군도국가는 이를 지정·설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10. 군도국가는 자국이 지정하거나 설정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의 축을 해도에 명시하고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1. 군도항로대를 통항중인 선박은 이 조에 따라 수립되고 적용되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존중한다.

12. 군도국가가 항로대나 항공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군도항로대 통항권은 국제항행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로를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54조 [통항·조사측량활동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군도국가의 의무 및 군도항로대 통항에 관한 군도국가의 법령]

제 39 조, 제 40 조, 제 42 조 및 제 44 조는 군도항로대 통항에 준용한다.

제 V 부 배타적 경제수역

제55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별한 법제도]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른다.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VI부에 따라 행사된다.

제57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58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 87 조에 규정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2. 제 88 조부터 제 115 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의 적절한 규칙은 이 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9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

이 협약에 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나 관할권이 연안국이나 다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또한 연안국과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한 경우, 그 마찰은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요성을 각각 고려하면서 형평에 입각하여 모든 관련상황에 비추어 해결한다.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을 건설하고, 이에 관한 건설·운용 및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a) 인공섬

(b) 제 56 조에 규정된 목적과 그 밖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과 구조물

(c)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물

2. 연안국은 이러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3. 이러한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설은 적절히 공시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영구적 수단을 유지한다.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거하며, 이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이러한 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로·해양환경 보호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한다.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구조물의 깊이, 위치 및 규모는 적절히 공표한다.

4. 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주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치할 수 있다.
5. 연안국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수역의 폭을 결정한다. 이러한 수역은 인공섬·시설 또는 구조물의 성격 및 기능과 합리적으로 연관되도록 설정되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바깥쪽 끝의 각 점으로부터 측정하여 500 미터를 넘을 수 없다. 안전수역의 범위는 적절히 공시한다.
6. 모든 선박은 이러한 안전수역을 존중하며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안전수 칙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항행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7. 인공섬·시설·구조물 및 그 주위의 안전수역은 승인된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항로대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
8.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1조 [생물자원의 보존]

1.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2. 연안국은 자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남획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하여 협력한다.
3. 이러한 조치는 최대지속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대상 어종의 자원량이 유지·회복되도록 계획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어업지역의 경제적 필요와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 요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어로방식·어족간의 상호의존성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기준 등 어느 기준에서 보나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적 최소기준을 고려한다.

4.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어획되는 어종에 연관되거나 종속되는 어종의 자원량의 생산량이 중대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 이상으로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연관 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 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그 밖의 자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국민의 입어가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국의 참여 아래 적절히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제62조 [생물자원의 이용]

1. 연안국은 제 61 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한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연안국이 전체 허용어획량을 어획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을 통하여 제 4 항에 언급된 조건과 법령에 따라 허용어획량의 잉여량에 관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연안국은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 특히 이러한 규정이 언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다.

3. 이 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그 수역의 생물자원이 연안국의 경제와 그 밖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중요성, 제 69 조 및 제 70 조의 규정, 잉여자원 어획에 관한 소지역내 또는 지역내 개발도상국의 요구 및 소속 국민이 그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로행위를 하여 왔거나 어족의 조사와 식별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은 연안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보존조치와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이러한 법령은 이 협약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련될 수 있다.

- (a) 어부에 대한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장비의 허가(이러한 허가조치에는 수수료나 다른 형태의 보상금 지급이 포함되며, 개발도상연안국의 경우 수산업에 관한 금융·장비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b) 어획가능한 어종의 결정 및 어획할당량의 결정(특정한 어족, 어족의 무리, 또는 특정기간동안 어선당 어획량 또는 특정기간동안 어느 국가의 국민에 의한 어획량으로 산정되는 어획할당량)
- (c) 어로기, 어로수역, 어구의 종류·크기 및 수량, 그리고 사용가능한 어선의 종류·크기 및 척수의 규제
- (d) 어획가능한 어류와 그 밖의 어종의 연령과 크기의 결정
- (e) 어선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어획량과 어업활동 통계 및 어선위치 보고포함)
- (f) 연안국의 허가과 통제에 따른 특정한 어업조사계획의 실시요구와 이러한 조사(어획물의 견본작성, 견본의 처리 및 관련 과학조사자료 보고를 포함) 실시의 규제
- (g) 연안국에 의한 감시원이나 훈련원의 어선에의 승선배치
- (h) 이러한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전부나 일부를 연안국의 항구에 내리는 행위
- (i) 합작사업이나 그 밖의 협력약정에 관한 조건
- (j) 연안국의 어로조사 수행능력 강화를 포함한 인원훈련과 어로기술의 이전조건
- (k) 시행절차

5. 연안국은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절히 공시한다.

제63조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어족]

1. 동일어족이나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2 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이러한 연안국들은,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2. 동일어족 또는 이와 연관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과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

한 소지역기구나 지역기구를 통하여 인접수역에서 이러한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64조 [고도회유성어종]

1. 연안국과 제 1 부속서에 열거된 고도회유성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서 그러한 어종의 보존을 보장하고 최적이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적절한 국제기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과 같은 수역에서 이러한 어종을 어획하는 국민이 있는 그 밖의 국가는 이러한 기구를 설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2. 제 1 항의 규정은 이 부의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65조 [해양포유동물]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적절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나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제66조 [소하성어족]

1. 소하성어족이 기원하는 하천의 국가는 이 어족에 대한 일차적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2. 소하성어족의 기원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모든 수역에서의 어로와 제 3 항 (b)에 규정된 어로에 관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를 수립함으로써 그 어족의 보존을 보장한다. 기원국은 이러한 어족을 어획하는 제 3 항과 제 4 항에 언급된 다른 국가와 협의한 후 자국 하천에서 기원하는 어족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다.
3. (a) 이 규정으로 인하여 기원국 이외의 국가에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성어족의 어획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진다.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 밖의 어획에 관하여 관련국은 그 어족에 관한 기원국의 보존요건 및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어로 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유지한다.
(b) 기원국은 소하성어족을 어획하는 다른 국가의 통상적인 어획량, 조업방법 및 모든 조업 실시지역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c) (b)에 언급된 국가가 기원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특히 그 경비분담 등 소하 성어족을 재 생산시키는 조치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기원국은 자국의 하천에서 기원한 그 어족의 어획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한다.

(d)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소하성어족에 관한 규칙은 기원국과 다른 관련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4. 소하성어족이 기원국이 아닌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을 통하여 회유하는 경우 이러한 국가는 그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기원국과 협력한다.

5. 소하성어족의 기원국과 이를 어획하는 그 밖의 국가는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지역기구를 통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67조 [강하성어종]

1. 강하성어종이 그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은 그 어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유어의 출입을 보장한다.

2. 강하성어종의 어획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한계의 육지쪽 수역에서만 행하여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이 행하여지는 경우 이 조의 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획에 관한 이 협약의 그 밖의 규정에 따른다.

3. 강하성어종이 치어로서 또는 성어로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회유하는 경우, 어획을 포함한 그 어종에 대한 관리는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와 그 밖의 관련국간의 합의에 따라 규제된다. 이러한 합의는 강하성어종의 합리적 관리를 보장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의 책임을 고려한다.

제68조 [정착성어종]

이 부는 제 77 조 제 4 항에서 정의한 정착성어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 [내륙국의 권리]

1. 내륙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관련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형평에 입각하여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 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참여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수립된다.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내륙국이 기존의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c) 다른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3.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있는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개발도상내륙국이 그 소지역 또는 지역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 2 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내륙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 선진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그 선진내륙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을 허용함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민이 있는 국가의 지역 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5.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나 우선적 권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내륙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서 합의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지리적불리국의 권리]

1. 지리적불리국은 모든 관련국의 경제적·지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이 조 및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 잉여량 중 적절한 양의 개발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부에서 "지리적불리국"이라 함은 폐쇄해나 반폐쇄해에 접한 국가를 포함한 연안국으로서, 그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국주민 또는 그 일부의 영양상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어류공급을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개발에 의존하여야 하거나,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없는 연안국을 말한다.

3. 이러한 참여의 조건과 방식은 특히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관련국에 의하여 확립된다.

(a) 연안국의 지역어업사회 및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회피할 필요

(b)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불리국이 기존의 양자협정, 소지역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정도

(c) 다른 지리적불리국과 내륙국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및 그 결과로 단일 연안국이 특별한 부담 또는 그 일부를 지게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

(d) 각국 주민의 영양상 필요

4. 연안국의 어획능력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 전체를 어획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 연안국과 그 밖의 관련국은 양국간,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상황에 적절하고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동일한 소지역이나 지역내에 있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생물자원 개발에 참여를 허용하는 공평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력한다.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 3 항에 규정한 사항도 함께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선진지리적불리국은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 있는 선진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한하여 생물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그 선진 지리적불리국은 그 선진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소속국민이 오랫동안 그 수역에서 조업하여 온 국가의 지역어업사회에 미칠 해로운 영향과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를 고려하여 온 정도를 참작한다.

6. 위의 규정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을 위한 평등한 권리나 우선적 권리를 동일한 소지역 또는 지역내의 지리적불리국에 부여하는 소지역 또는 지역내에서 합의된 약정을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1조 [제69조와 제70조 적용의 배제]

제 69 조와 제 70 조의 규정은 연안국의 경제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권리이전의 제한]

1. 제 69 조와 제 70 조에 규정한 생물자원개발 권리는 관계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나 면허, 합작사업의 설립 또는 권리 이전의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 3 국이나 그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될 수 없다.

2. 제 1 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언급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관련국이 제 69 조와 제 70 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3 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연안국법령의 시행]

1.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74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 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 X V 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 1 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75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이 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한계선 및 제 75 조에 따라 그은 경계확정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 한계선이나 경계확정선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6부 대륙붕

제76조 [대륙붕의 정의]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 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2. 연안국의 대륙붕은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 규정한 한계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
3. 대륙변계는 연안국 육지의 해면 아래쪽 연장으로서, 대륙붕·대륙사면·대륙융기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대륙변계는 해양산맥을 포함한 심해대양저나 그 하층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 (i)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 퍼센트인 가장 바깥 고정점을 제 7 항 에 따라 연결한 선
 - (ii) 대륙사면의 끝으로부터 60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 7 항에 따라 연결한 선
- (b) 현대의 증거가 없는 경우, 대륙사면의 끝은 그 기저에서 경사도의 최대변 경점으로 결정된다.
5. 제 4 항 (a) (i)과 (ii)의 규정에 따라 그은 해저에 있는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이루는 고정점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넘거나 2500 미터 수심을 연결하는 선인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6. 제 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 해리를 넘을 수 없다. 이 항은 해양고원·융기·캡·해퇴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변계의 자연적 구성요소인 해저고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 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

8.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II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9.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정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웃한 연안국의 대륙붕경계획정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권리는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적 권리이다.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 즉 수확가능단계에서 해저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체로 구성된다.

제78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

1.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다른 국가의 항행의 권리 및 이 협약에 규정한 다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방해로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대륙붕에서의 해저전선과 관선]

1. 모든 국가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륙붕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격을 가진다.

2. 연안국은 대륙붕의 탐사와 대륙붕의 천연자원개발, 그리고 관선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권리에 따라 이러한 전선이나 관선의 부설이나 유지를 방해할 수 없다.
3. 대륙붕에서 위의 관선 부설경로의 설정은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영토나 영해를 거쳐가는 전선이나 관선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연안국의 권리, 대륙붕의 탐사나 그 자원의 개발 또는 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설하거나 사용하는 전선과 관선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각국은 해저전선이나 관선을 부설함에 있어서 이미 설치된 전선이나 관선을 적절히 고려한다. 특히 기존전선이나 관선을 수리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0조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

제 60 조의 규정은 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준용한다.

제81조 [대륙붕시추]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200해리 밖의 대륙붕개발에 따른 금전지급 및 현물공여]

1.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무생물자원 개발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공여한다.
2. 금전지급과 현물공여는 생산개시 5 년 후부터 그 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매년 납부된다. 6 년째의 금전지급이나 현물공여의 비율은 생산물의 가격이나 물량의 1 퍼센트로 유지한다. 그 비율은 12 년째까지 매년 1 퍼센트씩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는 7 퍼센트로 한다. 생산물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자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자국의 대륙붕에서 생산되는 광물자원의 순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은 그 광물자원에 대한 금전지급이나 현물공여로부터 면제된다.
4. 금전지급과 현물공여는 해저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저기구는 이를 개발도상국 특히 개발도상국 중 최저개발국 및 내륙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고 공평분배의 기준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분배한다.

제83조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 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 X V 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 1 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84조 [해도와 지리적 좌표목록]

1. 이 부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한계선과 제 83 조에 따라 그은 경계획정선은 그 위치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축척의 해도에 표시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바깥한계선이나 경계획정선은 측지자료를 명기한 각 지점의 지리적 좌표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절히 공표하고 그 사본을 국 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대륙붕의 바깥한계선을 표시하는 해도나 좌표목록의 경우에는 이를 해저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85조 [굴착]

이 부의 규정은 하층토 상부의 수심에 관계없이 굴착에 의하여 하층토를 개발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VI부 공 해

제1절 총 칙

제86조 [이 부 규정의 적용]

이 부의 규정은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또는 군도국가의 군도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양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이 조는 제 58 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가 향유하는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7조 [공해의 자유]

1. 공해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공해의 자유는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사된다. 연안국과 내륙국이 향유하는 공해의 자유는 특히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

(a) 항행의 자유

(b) 상공비행의 자유

(c) 제VI부에 따른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d) 제VI부에 따라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그 밖의 시설 건설의 자유

(e) 제 2 절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른 어로의 자유

(f) 제VI부와 제XIII부에 따른 과학조사의 자유

2. 모든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해의 자유의 행사에 관한 다른 국가의 이익 및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이 협약상의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88조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제89조 [공해에 대한 주권주장의 무효]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아래 둘 수 없다.

제90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91조 [선박의 국적]

1.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국적의 부여, 자국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간에는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

제92조 [선박의 지위]

1.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선박은 진정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중이나 기항중에 그 국기를 바꿀 수 없다.
2. 2 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93조 [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한 선박]

앞의 조항들은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를 게양하고 그 기구의 공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관련된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기국의 의무]

1.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2. 모든 국가는 특히,
 - (a)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형선박을 제외하고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명과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선박등록대장을 유지한다.
 - (b) 선박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과 관련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그 선박의 선장, 사관과 선원에 대한 관할권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한다.
3.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 (a) 선박의 건조, 장비 및 감항성

(b) 적용가능한 국제문서를 고려한 선박의 인원배치, 선원의 근로조건 및 훈련

(c) 신호의 사용, 통신의 유지 및 충돌의 방지

4. 이러한 조치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a) 각 선박은 등록전과 등록후 적당한 기간마다 자격있는 선박검사원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안전항행에 적합한 해도·항행간행물과 항행장비 및 항행도구를 선상에 보유한다.

(b) 각선박은 적합한 자격, 특히 선박조종술·항행·통신·선박공학에 관한 적합한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사관의 책임 아래 있고, 선원은 그 자격과 인원수가 선박의 형태·크기·기관 및 장비에 비추어 적합 하여야 한다.

(c) 선장·사관 및 적합한 범위의 선원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충돌의 방지, 해양 오염의 방지·경감·통제 및 무선통신의 유지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에 완전히 정통하고 또한 이를 준수한다.

5. 제 3 항과 제 4 항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각국은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적인 규제 조치, 절차 및 관행을 따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선박에 관한 적절한 관할권이나 통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기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기국은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각국은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명손실이나 중대한 상해, 다른 국가의 선박이나 시설,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일으킨 공해상의 해난이나 항행사고에 관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관계되는 모든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입회 아래 조사가 실시되도록 한다. 기국 및 다른 관련국은 이러한 해난이나 항행사고에 관한 그 다른 관련국의 조사실시에 서로 협력한다.

제95조 [공해상 군함의 면제]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96조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의 면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공해에서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제97조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1.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2. 징계문제와 관련, 선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한 국가만이 적법절차를 거친 후, 이러한 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증명서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3. 선박의 나포나 억류는 비록 조사를 위한 조치이더라도 기국이 아닌 국가의 당국은 이를 명령할 수 없다.

제98조 [지원제공의무]

1. 모든 국가는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a)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제공

(b)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선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전속력 향진하여 조난자를 구조하는것

(c) 충돌후 상대선박·선원·승객에 대한 지원제공 및 가능한 경우 자기선박 의 명칭·등록항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항예정지를 상대선박에 통보

2. 모든 연안국은 해상안전에 관한 적절하고도 실효적인 수색·구조기관의 설치·운영 및 유지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역약정의 형태로 인접국과 서로 협력한다.

제99조 [노예수송금지]

모든 국가는 자국기 게양이 허가된 선박에 의한 노예수송을 방지하고 처벌하며 자국기가 그러한 목적으로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다. 선박에 피난한 노예는 그 선박의 기국이 어느 나라이건 피난사실자체로써 자유이다.

제100조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도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ii)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c) (a)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제102조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행위]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가 제 101 조에 정의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03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가 제 101 조에 언급된 어느 한 행위를 목적으로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선이나 해적항공기로 본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로서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한 또한 같다.

제104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국적 보유 또는 상실]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국적의 보유나 상실은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5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도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

별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 3 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6조 [충분한 근거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7조 [해적행위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제108조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1.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선박에 의하여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행하여지는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거래의 진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9조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

1. 모든 국가는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을 진압하는데 협력한다.
2. 이 협약에서 "무허가방송"이라 함은 국제규정을 위배하여 일반대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공해상의 선박이나 시설로부터 음성무선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을 송신함을 말한다. 다만, 조난신호의 송신은 제외한다.
3.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국가의 법원에기소될 수 있다.
 - (a) 선박의 기국
 - (b) 시설의 등록국
 - (c) 종사자의 국적국
 - (d)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 (e)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

4. 제 3 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는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선박을 제 1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해에서 체포하거나 나포하고 방송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

제110조 [임검권]

1. 제 95 조와 제 96 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간섭행위가 조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a) 그 선박의 해적행위예의 종사

(b) 그 선박의 노예거래예의 종사

(c) 그선박의 무허가방송예의 종사 및 군함 기국이 제 109 조에 따른 관할권 보유

(d) 무국적선

(e)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 보유

2. 제 1 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군함은 그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군함은 혐의선박에 대하여 장교의 지휘 아래 보조선을 파견할 수 있다. 서류를 검열한 후에도 혐의가 남아있는 경우, 가능한한 신중하게 그 선박내에서 계속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혐의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또한 임검을 받은 선박이 그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입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4.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 준용한다.

5.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한다.

제111조 [추적권]

1.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

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았을 때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반드시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선박이 제 33 조에 정의된 접속수역에 있을 경우 추적은 그 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2. 추적권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대륙붕시설 주변의 안전수역 포함)에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러한 안전수역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 3 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4. 추적당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또는 추적당하는 선박을 모선으로 사용하면서 한 선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그 밖의 보조선이 영해의 한계내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 한계내에 또는 대륙붕 상부에 있다는 사실을 추적선박이 이용가능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추적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5.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 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6. 추적이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a)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 정선명령을 한 항공기는 선박을 직접 나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항공기가 요청한 연안국의 선박이나 다른 항공기가 도착하여 추적을 인수할 때까지 그 선박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선박의 범법사실 또는 범법 혐의가 항공기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그 항공기에 의하여 또는 중단없이 계속하여 그 추적을 행한 다른 항공기나 선박에 의하여 정선명령을 받고 추적 당하지 아니하는 한, 영해 밖에서의 나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7. 어느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나포되어 권한있는 당국의 심리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의 항구에 호송된 선박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항행도중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느 한 부분이나 공해의 어느 한 부분을 통하여 호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석방을 주장할 수 없다.

8.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은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다.

제112조 [해저전선·관선의 부설권]

1. 모든 국가는 대륙붕 밖의 공해 해저에서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2. 제 79 조 제 5 항은 이러한 전선과 관선에 적용된다.

제113조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이 전선이나 전화통신을 차단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해밑에 있는 해저전선을 고의나 과실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관선이나 고압전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또한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기도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은 이러한 파괴 및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 후 자신의 생명이나 선박을 구하기 위하여 오직 적법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파괴 및 훼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 [해저전선·관선 소유자에 의한 다른 해저전선·관선의 파괴 및 훼손]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공해 밑에 있는 해저전선이나 관선의 소유자가 전선이나 관선을 부설·수리 도중 다른 전선이나 관선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제115조 [해저전선·관선 훼손을 피하는데 따르는 손실의 보상]

모든 국가는 선박의 소유자가 해저전선이나 관선의 훼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닻, 어망 또는 그 밖의 어구를 멸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가 사전에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전선이나 관선의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제2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제116조 [공해어업권]

모든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국민이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 63 조 제 2 항과 제 64 조부터 제 67 조까지의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

(c) 이 절의 규정

제117조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모든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18조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모든 국가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동일한 생물자원이나 동일수역에서의 다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있는 모든 국가는 관련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그 국가는 소지역 또는 지역어업기구를 설립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제119조 [공해생물자원 보존]

1. 공해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그 밖의 보존조치를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한 환경적·경제적 관련요소에 따라 제한되고 어업형태·어족간 서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 및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이거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최대지속 생산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하는 어종의 자원량을 유지·회복하도록 관계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계획된 조치를 취한다.

(b) 어획하는 어종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어종의 자원량의 재생산이 뚜렷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이상으로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연관 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이용가능한 과학적정보, 어획량 및 어업활동 통계와 수산자원보존에 관련된 그 밖의 자료는 적절한 경우 모든 관련국이 참여한 가운데 권한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지구적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3. 관계국은 보존조치와 그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어민에 대하여서도 형식상 또는 실질상의 차별이 없도록 보장한다.

제120조 [해양포유동물]

제 65 조는 공해의 해양포유동물의 보존과 관리에도 적용한다.

제Ⅷ부 섬제도

제121조 [섬제도]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IX부 폐쇄해·반폐쇄해

제122조 [정의]

이 협약에서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라 함은 2 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 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를 말한다.

제123조 [폐쇄해·반폐쇄해 연안국간 협력]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 국가는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지역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a)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보존·탐사 및 이용 조정
- (b) 해양환경보호·보전에 관한 권리의무 이행의 조정
- (c) 과학조사정책의 조정 및 적절한 경우 해역에서의 공동과학조사계획의 실시
- (d)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서로 협력하기 위한 다른 이해관계국이나 국제기구의 초청

제 X 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 자유

제124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에서,

- (a) "내륙국"이라 함은 해안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 (b) "통과국"이라 함은 해안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내륙국과 바다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영토를 통하여 통과교통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 (c) "통과교통"이라 함은 물건을 옮겨 싣거나, 창고에 넣거나, 짐을 분할하거나, 또는 운송방식을 바꾸거나 관계없이, 내륙국의 영토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전체 운송과정의 한부분으로서 1 개국 이상의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사람, 화물, 상품 및 운송수단의 통과를 말한다.
- (d) "운송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i) 철도차량, 해양용·호수용·하천용 선박 및 육로차량
 - (ii) 현지사정에 따라서는 운반인이나 운반용 동물

2. 내륙국과 통과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송수단으로 관선·가스관 및 제 1 항 에 포함된 것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5조 [해양출입권과 통과 자유]

1. 내륙국은 공해의 자유와 인류의 공동유산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해양출입권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내륙국은 모든 수송수단에 의하여 통과국의 영토를 지나는 통과 자유를 향유한다.
2. 통과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과 방식은 내륙국과 관련통과국 사이의 양자협정이나 소지역적·지역적 협정을 통하여 합의된다.
3. 통과국은 자국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부에서 내륙국을 위하여 규정된 권리와 편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국의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26조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제외]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제127조 [관세·조세와 그 밖의 부과금]

1. 통과교통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하여 징수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징수되지 아니한다.

2. 내륙국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한 내륙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통과운송수단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서는 통과국의 운송수단의 사용에 따라 징수되는 것보다 높은 조세나 부과금이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128조 [자유지역과 그 밖의 세관시설]

통과교통의편의를 위하여 자유지역이나 그 밖의 세관시설을 통과국과 내륙국간 협정에 따라 그러한 통과국 내의 출입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 [운송수단의 건조·개선을 위한 협력]

통과국에 통과와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거나 항구시설과 장비를 비롯한 기존수단이 어느 면에서든 불충분한 경우, 통과국과 관련내륙국은 이를 건조하고 개선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제130조 [통과교통에 있어서 기술상의 지연·곤란을 회피·제거하기 위한 조치]

1. 통과국은 통과교통에 있어서 지연 또는 그밖의 기술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지연이나 곤란이 발생한 경우 관련통과국과 내륙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131조 [해항에 있어서 동등대우]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132조 [통과편의 확대허용]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 통과편의로서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상의 통과편의를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장래에 더 많은 통과편의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X부 심해저

제1절 총 칙

제133조 [용어의 사용]

이 부에서,

(a) "자원"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를 비롯하여, 심해저의 해저나 해저 아래에 있는 자연상태의 모든 고체성, 액체성 또는 기체성 광물자원을 말한다.

(b) 자원이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경우 이를 "광물"이라 한다.

제134조 [이 부의 적용범위]

1. 이 부는 심해저에 적용된다.

2. 심해저활동은 이 부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 1 조 제 1 항 (a)에 언급된 한계를 표시하는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의 기탁과 공표에 관한 요건은 제VI부에 규정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VI부에 따른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이나 해안을 마주하거나 해안이 인접한 국가간의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5 조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이 부 또는 이 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행사되는 어떠한 권리도 심해저 상부수역이나 상공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제136조 [인류의 공동유산]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제137조 [심해저와 그 자원의 법적지위]

1.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자연인·법인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권, 주권적 권리의 주장·행사 또는 독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것이며, 해저기구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활동한다. 이러한 자원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은 이 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3. 국가,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 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취득 또는 행사할 수 없다. 이 부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 주장, 취득 및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심해저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행위]

심해저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행위는 이 부의 규정,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원칙 및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제협력과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139조 [협약준수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1. 당사국은 당사국이나 국영기업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이 이 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심해저활동에 있어서는 그 국제기구가 동일한 의무를 진다.

2. 국제법의 규칙과 제Ⅲ부속서 제 22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이 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함께 활동하는 당사국이나 국제기구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국이 제 153 조 제 4 항과 제Ⅲ부속서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 153 조 제 2 항 (b)의 규정에 따라 보증한 자가 이 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그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0조 [인류의 이익]

1. 심해저활동은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바와 같이 연안국이나 내륙국 등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 및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 1514(XV)호와 그 밖의 국제연합총회의 관련결의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완전독립 또는 그밖의 자치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한다.

2.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 160 조 제 2 항 (f), (i)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통하여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제141조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

심해저는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차별없이, 이 부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개방된다.

제142조 [연안국의 권리와 적법한 이익]

1. 국가관할권 한계에 걸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의 광상에 대한 심해저활동은 이러한 광상이 그 관할권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연안국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된다.

2. 이러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국 사이에 사전통고제도를 포함한 협의의 유지한다. 심해저활동이 국가관할권 내에 있는 자원의 개발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이 부 및 이 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행사되는 어떠한 권리도 심해저활동으로부터 초래되거나 야기되는 오염이나 오염발생의 위험, 그밖의 위험한 사태로부터 자국의 연안이나 관련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을 방지, 경감 및 제거하기 위하여 제?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3조 [해양과학조사]

1.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제X III부에 따라 오로지 평화적 목적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된다.

2. 해저기구는 심해저와 그 자원에 관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목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을 증진하고 장려하며, 이용 가능한 경우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조정하고 보급한다.

3. 당사국은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따라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a) 국제계획 참여 및 여러 국가와 해저기구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 조사를 위한 협력의 장려

(b)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기술후진국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개발되도록 보장

(i) 이러한 국가의 조사능력 강화

(ii) 조사기술과 응용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와 해저기구 직원의 훈련

(iii) 심해저조사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의 자격있는 인원의 고용촉진

(c) 해저기구나 그 밖의 국제경로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용 가능한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급

제144조 [기술이전]

1. 해저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다음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a)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지식 획득

(b) 모든 당사국이 이익을 얻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러한 기술과 과학지식 의 이전의 증진 및 장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와 당사국은 개발청과 모든 당사국이 이익을 얻도록 심해저활동과 관련된 기술과 과학지식의 이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증진한다.

(a) 개발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심해저활동 관련 기술이전계획(특히 개발청과 개발도상국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 아래 관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

(b) 개발청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특히 개발청과 개발도상국의 인원에 대하여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훈련과 심해저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 제공)

제145조 [해양환경보호]

심해저활동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한다.

(a) 해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과 그밖의 위험 및 해양환경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영향의 방지·경감 및 통제(시추·준설·굴착 및 폐기물 투기, 이러한 활동에 관련된 시설,

관선과 그 밖의 장비의 건설·운용·유지와 같은 활동에 의한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할 필요성에 특별히 유의함)

(b) 심해저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및 해양환경의 동식물군에 대한 피해방지

제146조 [인명보호]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인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관련 조약에 구현된 기존 국제법을 보충할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한다.

제147조 [심해저와 해양환경에서의 활동조정]

1. 심해저활동은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2. 심해저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이러한 시설은 이 부의 규정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만 건조·설치·제거되며, 이러한 시설의 건조·설치·제거는 적절하게 통지되고, 또한 그 존재에 관한 항구적 경고수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b) 이러한 시설은 국제항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 항로대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해역이나 어로활동이 집중되는 해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c) 이러한 시설 주위에는 항행과 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표지를 갖춘 안전수역을 설정한다. 이러한 안전수역의 형태와 위치는 특정 해역으로 향하는 합법적인 해운이나 국제항로대를 통한 항행을 방해하는 띠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 없다.

(d) 이러한 시설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e) 이러한 시설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시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그 존재가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은 심해저활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된다.

제148조 [개발도상국의 심해저활동 참여]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이익과 필요, 특히 개발도상국 중 내륙국이나 지리적불리국이 심해저로부터의 원격성 또는 접근의 어려움등 불리한 위치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여야 하는 특별한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부에서 특별히 정한 바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심해저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장한다.

제149조 [고고학적·역사적 유물]

심해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모든 물건은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하거나 처분하며, 특히, 기원국, 문화적 기원국 또는 역사적·고고학적 기원국의 우선적 권리를 특별히 고려한다.

제3절 심해저자원 개발

제150조 [심해저활동 관련정책]

심해저활동은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바에 따라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의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다음이 보장되도록 수행된다.

- (a) 심해저자원 개발
- (b) 심해저자원의 질서있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심해저활동의 능률적 수행, 건전한 보존원칙의 준수 및 불필요한 낭비의 방지 포함)
- (c) 특히 제 144 조와 제 148 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심해저활동 참여 기회확대
- (d) 이 협약에 규정된 해저기구의 수익 참여와 개발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 (e) 이러한 광물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생산된 광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해저 생산광물의 공급증대
- (f) 심해저와 다른 곳으로부터 생산된 광물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소비 자에게 공정한 적정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장하고 수요 공급의 장기적 균형을 조장
- (g) 사회적·경제적 체제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이 심해저 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및 심해저활동 독점의 방지
- (h)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가격하락이나 수출량 감소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나 수출소득에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보호(그러한 광물가격 하락이나 수출량 감소가 제 151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된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초래된 범위내에서)
- (i)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유산 개발

(j) 심해저자원으로부터 생산된 광물과 이러한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위한 시장 접근조건은 다른 곳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최혜조건보다 더 유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1조 [생산정책]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제 150 조에 규정된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 150 조 (h)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존회의를 통하여 또는 적절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을 통하여 활동함으로써 심해저에서 나오는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 시장의 성장·효율성 및 안정성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에서 유지되도록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b) 해저기구는 이러한 상품을 다루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든 상품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저기구는 이러한 회의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약정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약정이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기관에 대한 해저기구의 참여는 심해저에서의 생산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관의 관련규칙에 따른다.

(c)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모든 관련 광물의 생산에 관한 통일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항에 언급된 약정이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이와 같이 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개발청의 기존약정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조건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제 3 항에 명시된 잠정기간동안 상업생산은 조업자가 신청하고 해저기구에 의하여 생산 인가가 발급될 때까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 한다. 이러한 생산인가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다른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계획에 따른 상업생산의 개시시점보다 5 년 이전에 신청되거나 발급될 수 없다.

(b) 생산인가의 신청에 있어서 조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연간 채취예상 니켈량을 명시한다. 신청서에는 조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지출할 경비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경비는 조업자가 계획된 날짜에 상업생산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다.

(c) (a)와 (b)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Ⅲ부속서 제 17 조에 따른 적절한 이행 요건을 설정한다.

(d)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중 생산이 계획되어 있는 각 연도에 있어서 신청된 생산수준과 이미 인가된 수준의 합계가 인가발급년도에 제 4 항에 따라 계산된 니켈 생산량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신청된 생산수준에 대한 생산인가를 발급한다.

(e) 생산인가가 발급된 경우, 생산인가와 승인된 신청은 승인된 사업계획의 일부가 된다.

(f) 조업자의 생산인가 신청이 (d)에 따라 거부된 경우, 조업자는 언제라도 해저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잠정기간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최초의 상업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된 연도 1 월 1 일의 5 년전에 개시된다. 최초의 상업생산이 원래 계획년도 이후로 연기되는 경우, 잠정기간의 시작과 원래 계산된 생산년도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잠정기간은 25 년이 되는 시점, 제 155 조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의 종료 시점, 또는 제 1 항에 언급된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점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약정이나 협정이 소멸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이 조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잠정기간의 각 연도의 생산한도는 다음의 합계로 한다.

(i) (a)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최초상업 생산년도의 직전년도와 잠정기간 개시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차이

(ii) (b)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생산인가가 신청된 연도와 최초 상업생산년도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의 차이의 60 퍼센트

(b) (a)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i) 니켈생산한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추세치는 생산인가 발급년도에 계산된 추세선상의 연간 니켈소비량으로 한다. 추세선은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근 15 년간의 실제 니켈소비량에 관한 선형 대수 회귀선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추세선을 원추세선이라고 한다.

(ii) 원추세선의 연증가율이 3 퍼센트 미만인 경우, (a)에 규정된 생산량의 결정에 사용된 추세선은 원추세선상의 최근 15 년간의 최초년도 값을 지나서 매년 3 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선으로 대신한다. 다만, 잠정기간중 어떠한 연도에 대하여 설정된 생산년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해의 원추세치와 잠정기간 시작 직전년도의 원추세치의 차이를 넘지 아니한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개발청의 최초생산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 4 항에 따라 계산된 이용가능한 생산한도 중에서 개발청에 38,000 톤의 니켈을 유보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조업자는 생산총량이 생산인가에 명시된 양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해의 생산인가에 명시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광물의 연간생산수준의 8 퍼센트까지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다. 어느해에 8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이하인 생산초과, 또는 생산초과가 2 년 연속된 후 직후년도와 그 후 계속되는 연도의 생산초과는 해저기구와 협의되고, 해저기구는 조업자에게 추가생산에 관한 보충생산인가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이러한 보충생산 인가신청은 아직 생산인가를 얻지 못한 조업자에 의한 모든 계류된 신청이 처리되고, 예상되는 다른 신청자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 후 해저기구에 의하여 심사된다.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어떠한 연도의 생산한도에 따라 허용된 총생산량을 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해저기구는 어떠한 사업계획 아래에서도 연간 46,500 톤을 넘게 니켈생산을 인가할 수 없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생산인가에 따라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추출된 구리, 코발트 및 망간 등 그 밖의 광물 생산수준은 조업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단괴로부터 니켈을 최대한 생산할 경우에 생산될 수준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저기구는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Ⅲ부속서 제 17 조에 따라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8.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에 관한 관련 다자무역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는 심해저광물의 탐사와 개발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그러한 다자무역협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해저기구는 제 161 조 제 8 항에 따른 규칙을 채택 함으로써 적절한 조건하에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되는 광물 이외에 심해저로부터 생산되는 광물의 생산수준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10.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는 영향받은 광물의 가격하락 또는 수출량감소로 인하여 수출소득이나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그러한 가격하락과 수출량감소가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한도내에서 원조하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수립하거나 전문기구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비롯한 경제조정 지원 조치를 취한다. 해저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문제에 관하여 그 곤란을 최소화하고 그 국가의 경제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제152조 [해저기구의 권한행사와 임무수행]

1.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기회의 제공을 비롯한 그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차별을 피한다.

2. 그러나, 이 부에 특별히 규정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개발도상국 중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에 대한 특별고려 포함)는 허용된다.

제153조 [탐사·개발제도]

1. 심해저활동은 이 조의 규정, 이 부의 그밖의 관련규정, 관련부속서와 해저기구의 규칙·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인류전체를 위하여 조직·수행·통제된다.

2. 심해저활동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주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a) 개발청

(b) 해저기구와 제휴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보증하는 경우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당사국이나 그 국민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국영기업·자연인·법인 또는 제III부속서와 이 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앞의 주체의 모든 집합체

3. 심해저활동은 제Ⅲ부속서에 따라 작성되고 법률·기술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된 후 이사회가 승인한 공식 서면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해저기구가 인가한 바에 따라 제 2 항 (b)의 규정에 명시된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의 경우, 사업계획은 제Ⅲ부속서 제 3 조에 따른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제Ⅲ부속서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2 절 4 항 참조>

4. 해저기구는 이 부의 관련규정, 관련 부속서 및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제 3 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제를 한다. 당사국은 제 139 조에 따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저기구를 지원한다.

5. 해저기구는 이 부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이 부 또는 계약에 따라 해저기구에 부여된 통제와 규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이 부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심해저 시설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6. 제 3 항에 따른 계약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다. 이러한 계약은 제Ⅲ부속서 제 18 조와 제 19 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정지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154조 [정기적 재검토]

총회는 이 협약이 발효한 후 5 년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국제심해저제도의 실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재검토를 한다. 이러한 재검토에 비추어 총회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도운영의 개선을 가져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5조 [재검토회의]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최초의 상업생산이 시작된 연도의 1 월 1 일로부터 15 년 후에 총회는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를 규율하는 이 부 및 관련 부속서의 규정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재검토회의는 그 기간중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다음을 상세히 검토한다.

(a)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를 규율하는 이 부의 규정이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b) 15 년 기간동안 유보지역이 비유보지역과 비교하여 효과적이고 균형된 방식으로 개발되었는지 여부

(c) 심해저와 심해저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무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d) 심해저활동의 독점이 방지되었는지 여부

(e) 제 150 조와 제 151 조에 규정된 정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f)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그 제도가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가져왔는지 여부

2. 재검토회의는 인류공동유산원칙,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해저자원의 공평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제도 및 심해저활동을 조직·수행 및 통제하는 해저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검토회의는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주권의 주장·행사의 배제, 심해저와 관련한 국가의 권리와 일반적인 행위, 이 협약에 따른 국가의 심해저활동 참여, 심해저활동 독점 방지,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심해저이용, 심해저활동의 경제적 측면, 해양과학조사, 기술이전, 해양환경보호, 인명보호, 연안국의 권리, 심해저의 상부수역과 상공의 법적지위 및 심해저활동과 해양환경에서의 그 밖의 활동과의 조정 등에 관하여 이 부에 규정된 원칙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재검토회의에서 적용하는 의사결정절차는 제 3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적용된 절차와 같다. 회의는 어떠한 개정이라도 총의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총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때까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표결하지 아니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재검토회의 시작으로부터 5 년이 지난 후에도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제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재검토 회의는 그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당사국 3/4 의 다수에 의하여 그 회의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비준·가입하도록 당사국에게 제시할 것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3/4 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12 개월 후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회의가 채택한 개정안은 기존의 계약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해저기구

소절 A. 총 칙

제156조 [해저기구의 설립]

1. 이 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해저기구를 설립한다.
2. 모든 당사국은 당연히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3.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제 305 조 제 1 항 (c), (d), (e) 또는 (f)에 언급되지 아니한 제 3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참관자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참관자로 해저 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해저기구의 소재지는 자메이카에 둔다.
5. 해저기구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7조 [해저기구의 성격과 기본원칙]

1. 해저기구는 당사국이 특히 심해저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기구이다.
2. 해저기구의 권한과 임무는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해저기구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그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에 내재하고 필요하며 이 협약에 부합하는 부수적 권한을 가진다.
3. 해저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를 둔다.
4.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회원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모든 회원국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에 따라 스스로 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58조 [해저기구의 기관]

1. 해저기구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2. 해저기구는 제 17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개발청을 설치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을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해저기구와 개발청의 주요기관은 그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기관은 다른 기관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한의 행사와 임무의 수행을 손상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다.

소절 B. 총 회

제159조 [구성·절차 및 표결<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1. 총회는 해저기구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 1 인의 대표를 파견하며, 대표는 교체대표와 고문을 대동할 수 있다.

2. 총회는 연례 정기회기 및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이사회의 요청 또는 해저기구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되는 특별 회기에 회합한다.

3. 회기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4. 총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총회는 각 정기회기 초에 의장과 그밖의 필요한 임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다음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5.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6. 총회에서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7. 총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하는 결정을 포함한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8.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2/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내려지며 이러한 다수에는 그 회기에 참가한 회원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문제가 실질문제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경우, 총회에서 실질문제의 표결에 요구되는 다수결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실질문제로 취급된다.

9. 실질문제가 처음 표결에 회부되는 경우, 의장은 5 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문제에 관한 표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국 중 최소한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기한다. 이 규칙은 어느 문제에 관하여 1 회만 적용하되, 회기종료일 이후까지 그 문제를 연기할 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10. 해저기구의 회원국 중 1/4 이상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이 협약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총회는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에 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고 재판부에 의한 권고적 의견을 접수할 때까지 그 제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회기의 마지막 주까지 권고적 의견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 총회는 연기된 제안에 관하여 표결을 하기 위한 회합시기를 결정한다.

제160조 [권한과 임무]

1.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해저기구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바에 따라 다른 주요기관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해저기구의 최고기관으로 본다. 총회는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2. 또한 총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제 16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원국 선출

(b) 이사회가 제정한 후보자 중에서 사무총장 선출

(c)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개발청 관리위원회의 임원과 개발청의 사무 국장 선출

(d) 총회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이러한 보조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 및 그 보조기관이 취급하는 관련 기술사항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회원국의 특수한 이익 및 필요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e) 해저기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행정경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을 때까지 국제연합의 정규예산 분담금 비율에 기초하여 합의된 분담금 비율에 따라 해저기구의 행정예산을 위한 회원국의 분담금 배정

(f) (i) 개발도상국 및 완전한 독립이나 자치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 여진 금전지급과 현물공여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심의와 승인. 총회가 이사회의 권고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총회가 표명한 의견에 비추어 재심의하도록 그 권고를 이사회에 회송한다.

(ii) 제 162 조 제 2 항 (o) (ii)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잠정적으로 채택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이에 관한 개정의 심의와 승인.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심해저의 개발탐사, 탐사 및 개발, 해저기구의 재정 관리와 내부행정, 그리고 개발청 관리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개발청으로부터 해저기구로의 자금의 이전 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g) 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결정

(h) 이사회가 제출한 해저기구 연례예산안의 심의와 승인

(i) 이사회와 개발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이사회와 해저기구의 다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특별보고서의 심사

(j) 심해저활동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이에 관한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의 추진과 권고의 채택

(k)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문제 및 각국의 지리적 위치에 기인하는 심해저활동과 관련한 문제, 특히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에 관한 문제심의

(l) 경제기획위원회의 조언을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 151 조 제 10 항에 규정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지원 조치의 수립

(m) 제 185 조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조치

(n)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대한 토의 및 해저기구의 특정한 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문제나 사항을 해저기구기관 사이의 권한과 임무의 배분에 따라 해저기구의 어느 기관이 다룰 것인가에 관한 결정

소절 C. 이사회

제161조 [구성·절차 및 표결 <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이사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해저기구의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a)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5 년간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의 세계 총소비량의 2 퍼센트 이상을 소비하는 당사국이나 세계 총수입량의 2 퍼센트 이상을 순수입하는 당사국중 4 개국.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소비국과 동구(사회주의)지역의 1 개국을 포함한다.

(b) 직접 또는 그 국민을 통하여 심해저활동의 준비와 수행에 가장 많이 투자한 8 개 당사국 중 4 개국. 적어도 동구(사회주의)국가 중 1 개국을 포함한다.

(c)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의 생산을 기초로 하여 심해저로부터 채취 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 순수출국인 당사국 중에서 4 개국. 적어도 이러한 광물의 수출이 그 경제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 2 개국을 포함한다.

(d)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중에서 특별이익을 대표하는 6 개국. 대표되는 특별이익은 인구 다수국, 내륙국이나 지리적 불리국,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수입국, 이러한 광물의 잠재적 생산국 및 최저 개발국을 포함한다.

(e) 이사회 전체의식의 공평한 지리적배분 보장원칙에 따라 선출되는 18 개국.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국이 각 지역마다 최소 1 개국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리적 지역은 아프리카·아시아·동구(사회주의)·중남미·서구 및 기타 지역을 말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국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는 다음을 보장한다.

(a)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은 그들이 총회에서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된다.

(b) 제 1 항 (a), (b), (c) 또는 (d)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연안국, 특히 개발 도상국은 총회에서 그들이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된다.

(c)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각 당사국그룹은 그 그룹에 의하여 지명된 이사국이 있는 경우 지명된 이사국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선거는 총회 정기회기에서 행하여지고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4 년 임기로 선출된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각 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반수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4. 이사국은 재선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의식 순환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5. 이사회는 해저기구의소재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해저기구의 업무상 필요한 횡수만큼 회합하나 최소한 연 3 회 이상 회합한다.
6. 이사회 의의사정족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7. 각 이사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8. (a)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 진다.
- (b)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 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62 조 제 2 항 (f), (g), (h), (i), (n), (p), (v) 및 제 191 조
- (c)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3/4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 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62 조 제 1 항, 제 162 조 제 2 항 (a), (b), (c), (d), (e), (l), (q), (r), (s), (t), 계약자나 보증인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에는 (u), (w) (d)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명령은 30 일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162 조 제 2 항 (x), (y), (z), 제 163 조 제 2 항 제 174 조 제 3 항 및 제IV부속서 제 11 조
- (d) 다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제 162 조 제 2 항 (m), (o) 및 제?부의 개정안의 채택
- (e) (d), (f), (g)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의"라 함은 공식적인 반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제안이 이사회에 제출된 후 14 일 이내에 이사회 의 의장은 제안의 채택에 공식적인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 의 의장이 이러한 반대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사회 의 의장은 이러한 결정 후 3 일 이내에 이견을 조정하고 총의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작성 하기 위하여 9 개국 이하의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집한다. 위원회는 신속히 작업하여 설치 후 14 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가 총의로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권고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그 제안이 반대되는 이유를 밝힌다.
- (f)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명시된 이

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려지며,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전에 이사회가 총의로 결정한 어느 한 호의 규정에 따른다.

(g) 어떠한 문제가 (a), (b), (c) 또는 (d)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때에는 경우에 따라 보다 많거나 또는 가장 많은 다수의 의결이나 총의를 요하는 어느 한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이사회가 앞의 다수결이나 총의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사회는 이사국이 아닌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요청하였을 경우나 특히 그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심의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한 대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다.

제162조 [권한과 임무]

1.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이 협약 및 총회가 수립한 일반적인 정책에 따라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관하여 해저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개별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2. 또한 이사회는 다음을 행한다.

(a)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와 사항에 관하여 이 부의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불이행의 사례가 있을 경우 총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b)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 명부를 총회에 제출한다.

(c) 개발청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개발청의 사무국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d) 적절한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이 부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보조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기관이 다루는 관련 기술사항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역점을 두되, 공평한 지리적 배분 원칙과 특별이익과 원칙을 적절히 고려한다.

(e) 이사회 의장 선출방식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 (f)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기구의 권한내에서 국제연합이나 다른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 (g) 개발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와 함께 이를 총회에 송부한다.
- (h) 연례보고서 및 총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 (i) 제 170 조에 따라 개발청에 지시를 한다.
- (j)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제Ⅲ부속서 제 6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기중에 법률·기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60 일 안에 다음 절차에 따라 각 사업계획을처리한다.
- (i)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권고한 경우, 어떠한 이사국도 14 일 안에 의장에게 제Ⅲ부속서 제 6 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명시적인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계획이 이사회에 의 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반대가 있는 경우, 제 161 조 제 8 항 (e)에 규정된 조정절차가 적용된다. 조정절차가 끝난 후에도 반대가 있는 경우, 그 사업 계획은 신청국이나 신청자 보증국을 제외한 이사국의 총의로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 (ii)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하거나 권고 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3/4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회기에 출석한 이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k) (i)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제Ⅳ부속서 제 12 조에 따라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
- (l) 제 153 조 제 4 항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통제 한다.
- (m)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 150 조 (h)에 명시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n)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제 151 조 제 10 항에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 지원조치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 (o) (i) 개발도상국 및 완전한 독립이나 그밖의 자치적 지위를 얻지 못한 주민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이익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

82 조에 따라 행하여진 금전지급과 부담 공여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총회에 권고한다.

(ii) 총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법률·기술위원회나 그 밖의 하부 관련기관의 권고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및 이에 대한 개정 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고 적용한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심해저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과 해저기구의 재정관리와 내부행정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복합금속단괴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복합금속단괴 이외의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해저기구에 이러한 자원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을 요청한 날로부터 3 년 안에 채택된다. 모든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총회가 승인할 때까지 또는, 총회가 표명한 견해에 비추어 이사회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p) 이 부의 규정에 따른 조업과 관련하여 해저기구가 행하거나 해저기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모든 지불액의 징수를 심사한다.

(q)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제III부속서 제 7 조에 따라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인가 신청자 중에서 선정한다.

(r) 해저기구 연간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s) 해저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나 사항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t) 제 185 조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행사의 정지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u) 협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분쟁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한다.

(v) (u)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을 총회에 통보하고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한다.

(w)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정지 명령이나 조업조정명령을 포함한 비상명령을 내린다.

(x)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자나 개발청의 개발지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y) 아래와 관련된 재정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을 작성할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9 절 9 항 참조>

(i) 제 171 조부터 제 175 조까지에 따른 재정관리

(ii) 제Ⅲ부속서 제 13 조와 제 17 조 제 1 항 (c)에 따른 재정약정

(z) 이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검사할 검사관을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수립한다.

제163조 [이사회]의 기관]

1. 이사회에 다음 기관을 설치한다.

(a) 경제기획위원회

(b) 법률·기술위원회

2. 각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15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각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서 자격이 있고 최고수준의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배분과 특별이익이 대표되도록 적절히 고려한다.

5. 어느 당사국도 같은 위원회에서 2 인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누구도 2 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선출될 수 없다.

6. 위원회의 위원은 5 년 임기로 재직한다. 위원은 1 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7. 임기만료전 위원회의 위원의 사망, 무자격 또는 해직의 경우, 이사회는 잔여임기동안 재직할 위원을 동일한 지리적 지역이나 이해분야로부터 선출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심해저에서의 탐사와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재정상의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다. 위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원회에 대한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직무종료 후에도 산업상의 비밀이나 제Ⅲ부속서 제 14 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이전된 재산권 자료 또는 해저기구 임무수행중 알게된 그 밖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9. 각 위원회는 이사회가 채택하는 지침과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11. 위원회의 의사결정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권고에 위원회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요약하여 첨부한다.
12. 각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회합한다.
13. 각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다른 위원회, 국제연 합과 그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이러한 협의의 주제에 관하여 권한있는 어떠한 국제기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

제164조 [경제기획위원회]

1. 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은 광업, 광물자원활동의 관리,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제학 등과 관련된 적절한 자격을 갖춘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든 적절한 자격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는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수출이 자국 경제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위원을 적어도 2 인이상 포함한다.
2. 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 (a)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내려진 결 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 (b)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의 이익 특히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유의하여 심해저 광물의 공급, 수요, 가격 동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다.
 - (c) 관계당사국이 주의를 환기시킨 제 150 조 (h)에 언급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행한다.
 - (d) 제 151 조 제 10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해저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 지원조치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한다. 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이러한 보상제도나 그밖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권고를 한다.

제165조 [법률·기술위원회]

1. 법률·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가공, 해양학, 해양 환경보호, 또는 해양광업 및 기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경제적·법률적 사항등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적합한 모든 자격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률·기술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a) 이사회에 요청에 따라 해저기구의 임무수행에 관한 권고를 한다.

(b) 제 153 조 제 3 항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문서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위원회는 오로지 제III부속서에 규정된 근거에 기초하여 이러한 권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충분히 보고한다.

(c) 이사회에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경우,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나 관계국과 협의, 협력하여 심해저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d) 심해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분야에서 인정된 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하여 이사회에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권고를 한다.

(f) 심해저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제 162 조 제 2 항 (o)에 규정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g)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항상 검토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정안을 수시로 이사회에 제출한다.

(h)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위험이나 효과를 정기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는 감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기존의 규칙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이사회가 승인한 감시계획의 시행을 조정한다.

(i) 이 부 및 관련부속서에 따라, 특히 제 187 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해저분쟁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j) (i)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해저분쟁재판부가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k) 심해저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정지명령이나 조업조정명령을 포함한 비상명령을 내릴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권고를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l)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개발청의 개발지역을 승인하지 아니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m) 이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해저활동을 검사하는 검사관의 지휘와 감독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n)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이사회가 제Ⅲ부속서 제 7 조에 따라 생산인가 신청자 중에서 필요한 자를 선정한 후 제 151 조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에 따라 해저기구를 대표하여 생산한도를 계산하고 생산인가서를 발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감독과 검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이나 다른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국이나 다른 관련자의 대표를 대동한다.

소절 D. 사무국

제166조 [사무국]

1. 해저기구의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해저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 의하여 4 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수석행정직원이며, 그러한 자격으로 총회, 이사회 및 보조기관의 모든 회합에 참석하고 이들 기관에 의하여 위임된 다른 행정상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167조 [해저기구 직원]

1. 해저기구의 직원은 해저기구의 행정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학적·기술적 자격과 그 밖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된다.
2. 직원을 채용·고용하고 그 근무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직원의 임명, 보수 및 해고조건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8조 [사무국의 국제적 성격]

1.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해저기구 밖의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오직 해저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간다. 각 당사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존중하며, 그들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직원에 의한 책임 불이행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적절한 행정재판소에 회부된다.

2. 사무총장과 직원은 심해저 탐사,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재정적 이해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해저기구에 대한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직무가 종료한 이후에도 산업비밀이나 제Ⅲ부속서 제 14 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이전된 재산권 자료나 해저기구에 근무함으로써 알게된 그 밖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제 2 항에 규정한 해저기구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은,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거나, 요청에 따라 또는 제 153 조 제 2 항 (b)에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보증하고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저기구는 관련직원을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지정된 재판소에 회부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국은 그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가 권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관련직원을 해고한다.

4.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이 조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169조 [국제기구·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협력]

1.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한 국제기구,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과 약정을 체결한 기구는 해저기구의 기관의 의사 규칙에 따라 그러한 기관의 회합에 참관자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그러한 기구의 의견을 얻기 위한 절차를 확립한다.
3. 사무총장은 제 1 항에 언급된 비정부간 기구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해저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출한 서면보고서를 당사국에 배포할 수 있다.

소절 E. 개발청

제170조 [개발청]

1. 개발청은 제 153 조 제 2 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심해저로부터 채취된 광물의 수송, 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해저기구의 기관이다.
2.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국제법인격의 테두리 안에서 제IV부속서에 규정된 정관에 따른 법적 능력을 가진다. 개발청은 이 협약,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또한 총회가 확립한 일반정책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에 따른다.
3.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둔다.
4. 개발청은 제 173 조 제 2 항과 제IV부속서 제 11 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으며 제 144 조와 그 밖의 이 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을 인수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2 절 6 항 참조〉

소절 F. 해저기구의 재정

제171조 [해저기구의 자금]

해저기구의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제 160 조 제 2 항 (e)의 규정에 따라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납부한 분담금
- (b) 제III부속서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해저기구가 받은 자금
- (c) 제IV부속서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청로부터 이전된 자금
- (d) 제 174 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
- (e) 회원국이나 다른 주체가 납부한 자발적 기부금
- (f) 제 151 조 제 10 항에 따라 경제기획위원회가 권고하는 재원으로부터의 보상기금에 대한 납입금

제172조 [해저기구의 연간예산]

사무총장은 해저기구의 연간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이에 대한 권고와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제 160 조 제 2 항 (h)에 따라 연간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73조 [해저기구의 경비]

1. 제 171 조 (a)에 언급된 분담금은 해저기구가 다른 재원으로부터 해저기구의 행정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질 때까지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계정에 불입된다.

2. 해저기구의 행정경비는 해저기구의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제 171 조 (a)에 규정된 분담금을 제외하고, 행정경비 지급후 남은 자금은 특히 다음과 같이 배분하거나 사용한다.

(a) 제 140 조 및 제 160 조 제 2 항 (g)에 따라 배분한다.

(b) 제 170 조 제 4 항에 따라 개발청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c) 제 151 조 제 10 항 및 제 160 조 제 2 항 (l)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174조 [해저기구의 차입권한]

1. 해저기구는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가진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1 절 14 항 참조>

2. 총회는 제 160 조 제 2 항 (f)에 따라 채택된 재정규칙내에 해저기구의 차입권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다.

3.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차입권한을 행사한다.

4. 당사국은 해저기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5조 [연례감사]

연차재무제표를 비롯한 해저기구의 기록, 장부와 계산서류는 총회가 임명하는 독립된 감사관에 의하여 매년 감사를 받는다.

소절 G. 법적지위, 특권·면제

제176조 [법적지위]

해저기구는 국제법인격 및 그 임무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법적능력을 가진다.

제177조 [특권·면제]

해저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각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 관에서 규정된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개발청에 관한 특권·면제는 제Ⅳ부속서 제 13 조에 규정된 특권·면제와 같다.

제178조 [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해저기구와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제179조 [수색·압수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행정 또는 입법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제180조 [제한·규제·통제·동결로부터의 면제]

해저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어떠한 성격의 제한, 규제, 통제 및 동결조치로부터도 면제된다.

제181조 [해저기구의 문서보관소와 공용통신]

1. 해저기구의 문서보관소는 어디에 있든 불가침이다.
2. 재산권 자료·산업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및 인사기록은 공공에 개방되는 문서보관소에 비치될 수 없다.
3. 해저기구는 공용통신에 관하여 각 당사국이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각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182조 [해저기구 관련인사의 특권·면제]

총회나 이사회의 회합 또는 총회나 이사회 기관의 회합에 출석하는 회원국 대표, 해저기구의 사무총장 및 직원은 각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다음 사항을 향유한다.

- (a) 직무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관한 법절차로부터의 면제(단,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 또는 적절한 경우 해저기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
- (b) 이들이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그 당사국이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당사국의 대표 및 공무원과 고용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으로서의 의무로부터의 동등한 면제 및 외환제한에 관한 동일한 편의와 여행편의에 관한 동일한 대우

제183조 [조세·관세의 면제]

1. 해저기구, 그 재산과 자산, 수입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해저기구의 운영과 거래는 해저기구의 공적활동 범위안에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고, 또한 해저기구 공용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은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해저기구는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해저기구의 공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용역의 구입이 해저기구에 의하여 또는 해저기구를 대리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조세나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안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조세나 관세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거나 이를 환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하에 수입되거나 구입된 물품은, 면제를 부여한 당사국과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매각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되지 아니한다.
3. 해저기구의 사무총장과 직원, 해저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전문가에게 해저기구가 지급한 봉급, 수당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절 H.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

제184조 [표결권 행사의 정지]

해저기구에 대한 재정분담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 체납액이 과거 2년 동안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넘는 경우에는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점이 납득될 경우 총회는 이러한 회원국이 투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85조 [회원국의 권리·특권행사의 정지]

1. 총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당사국이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해저 분쟁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는 제 1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제5절 분쟁해결과 권고적 의견

제186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해저분쟁재판부]

해저분쟁재판부의 설치와 그 관할권 행사방식은 이 부, 제XV부 및 제VI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87조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심해저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a) 이 부 및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사이의 분쟁

(b) 다음 사항에 관한 당사국과 해저기구 사이의 분쟁

(i) 이 부 또는 이 부와 관련된 부속서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해저기구나 당사국의 작위나 부작위

(ii) 관할권의 일탈 또는 권한남용이라고 주장되는 해저기구의 행위

(c) 당사국, 해저기구 또는 개발청, 국영기업 및 제 153 조 제 2 항 (b)에 규정된 자연인이나 법인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다음 사항에 관한 분쟁

(i) 관련 계약이나 사업계획의 해석 또는 적용

(ii) 다른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그의 적법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작위나 부작위

(d) 제 153 조 제 2 항 (b)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증하고 제III부속서 제 4 조 제 6 항 및 제 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한 계약예정자와 해저기구 사이의 분쟁으로서 계약의 거부 또는 계약의 협상중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분쟁

(e) 해저기구가 제III부속서 제 22 조에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해저기구와 당사국, 국영기업 또는 제 153 조 제 2 항 (b)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보증한 자연인이나 법인 사이의 분쟁

(f)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그 밖의 분쟁

제188조 [국제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나 해저분쟁재판부 임시재판정 또는 구속력이 있는 상사중재에의 분쟁 회부]

1. 제 187 조 (a)에 언급된 당사국 사이의 분쟁은 다음 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다.

(a)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VI부속서 제 15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구성되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특별재판부

(b)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VI부속서 제 36 조에 따라 구성되는 해저분쟁 재판부 임시재판정

2. (a) 제 187 조 (c) (i)에 언급된 계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구속력 있는 상사중재에 회부된다. 분쟁이 회부되는 상사중재재판소는 이 협약의 해석문제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분쟁이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제?부 및 이와 관련된 부속서의 해석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저분쟁재판부에 회부하여 재정되도록 한다.

(b) 이러한 중재를 시작할 때 또는 도중에 중재재판소가 분쟁의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재판소의 직권으로 재판소의 결정이 해저분쟁재판부의 재정에 의존한다고 판정한 경우, 중재재판소는 재정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저분쟁재판부에 회부한다. 중재재판소는 해저분쟁재판부의 재정에 합치되게 결정을 내린다.

(c) 분쟁에 적용할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중재는 두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상거래위원회의 중재규칙이나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89조 [해저기구의 결정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제한]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에 따른 해저기구의 재량권행사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분쟁재판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해저기구의 재량을 대체할 수 없다. 해저분쟁재판부는 제 191 조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제 187 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이 협약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분쟁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나 이 협약상의 의무와 충돌된다는 주장, 관할권의 일탈 또는 권한남용에 관한 주장, 다른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관련당사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손해배상 또는 그 밖의 구제의 주장을 결정하는데 국한된다.

제190조 [보증당사국의 소송절차 참가와 출석]

1. 자연인이나 법인이 제 187 조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경우 보증국은 이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서면진술 또는 구두진술을 통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제 187 조 (c)에 언급된 분쟁에 있어서 어느 한 당사국을 상대로 다른 당사국이 보증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소국은 그 보증국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불출석의 경우, 피소국은 자국 국적의 법인을 대리로 내보낼 수 있다.

제191조 [권고적 의견]

해저분쟁재판부는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한 권고적 의견은 긴급 사항으로 제시된다.

제III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총 칙

제192조 [일반적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3조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각국은 자국의 환경정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다룬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가능한 한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a)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 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c)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러한 설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d)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그 밖의 설비나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러한 설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

4.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나 위험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어떤 형태의 오염을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제196조 [기술의 사용 또는 외래 종이나 새로운 종의 도입]

1. 각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지구적·지역적 협력

제197조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협력]

각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치하는 국제규칙, 기준, 권고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및 발전에 협력한다.

제198조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한다.

제199조 [오염대비 비상계획]

제 198 조에 언급된 경우, 피해지역에 있는 국가는 자국의 능력에 따라서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함께 가능한한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고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국은 공동으로 해양환경내의 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개발하고 촉진시킨다.

제200조 [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교환]

각국은 과학조사연구를 촉진시키고 과학조사계획을 실시하며 또한 해양환경오염에 관하여 획득된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각국은 오염의 성격과 범위의 평가, 오염에의 노출, 그 경로, 위험 및 구제조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역적·세계적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201조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

제 200 조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고려하여 각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규칙, 기준, 권고관행 및 절차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과학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협력한다.

제3절 기술지원

제202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지원]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행한다.

(a)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과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과학적·교육적·기술적 지원 및 그 밖의 지원계획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지원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i)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요원의 훈련
- (ii) 관련있는 국제계획에 개발도상국 요원의 참여 촉진
- (iii) 개발도상국에 대한 필요장비와 시설의 제공
- (iv)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장비의 생산능력 제고

(v) 연구·감시·교육 및 그 밖의 계획을 위한 시설의 개발과 조연

(b) 해양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c) 환경평가 준비에 관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203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선적 대우]

개발도상국은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또는 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다음 사항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a) 적절한 자금과 기술원조의 할당

(b) 국제기구의 전문적 용역의 이용

제4절 감시와 환경평가

제204조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1. 각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양립하는 범위내에서 직접적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한 노력한다.

2. 특히 각국은 자국이 허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영향을 계속 감시한다.

제205조 [보고서 발간]

각국은 제 204 조에 따라 획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국제기구는 이를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가능한한 평가하고 제 205 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제5절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입법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고려하여 강,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을 비롯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4.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능력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항에 언급된 법령, 조치,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특히 지속성이 있는 유독·유해한 물질의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을 가능한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제208조 [국가관할권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1.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저활동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 및 제 60 조와 제 80 조에 자국 관할권내에 건설된 인공성, 설비 및 구조물로 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적어도 국제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4.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적 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5.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제209조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1.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제?부에 따라 국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한다.
2. 이 절의 관계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되었거나 또는 자국의 권한 아래 운영되는 선박, 설비, 구조물 및 그 밖의 장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경우에 따라 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요건은 적어도 제 1 항에 언급된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와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이러한 법령과 조치는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없이 투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규칙,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5.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투기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는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승인 없이는 행할 수 없으며, 연안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을 다른 국가와 함께 그 문제를 적절히 검토한 후 이러한투기를 허용, 규제 및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6. 국내법령과 조치는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세계적 규칙 및 기준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11조 [선박에 의한 오염]

1.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연안을 포함한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고의 위협 및 연안국의 관련이익에 대한 오

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로제도의 채택을 촉진한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된다.

2.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되어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 및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3.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외국선박의 자국 항구와 내수로의 진입이나 연안정박시설 방문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규정한 국가는 이러한 요건을 적절히 공표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2 개국 이상의 연안국이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한 경우,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가하는 국가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를 항행할 경우, 그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그 선박이 이러한 협력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동일 지역의 국가로 항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또한 그러한 항진이 있을 경우 그 국가의 입항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선장에게 요구한다. 이 조는 선박의 지속적인 무해통항권 행사나 제 25 조 제 2 항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을 포함한 외국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국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 II 부 제 3 절에 따라 이러한 법령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연안국은 제 6 절에 규정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6. (a) 제 1 항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이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부적당하고, 연안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명확히 지정된 특정수역이 그 수역의 이용, 그 자원의 보호 및 교통상의 특수성과 그 수역의 해양학적·생태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된 기술적 이유에 비추

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특별 강제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수역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연안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관계국과 적절히 협의한 후, 그 국제기구에 수역을 통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적인 증거와 필요한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후 12개월 이내에 통보된 수역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 연안국은 그 수역에 있어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국제기구가 특별수역에 적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 또는 항행상의 관행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통보한 후 15개월동안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연안국은 명확히 확정된 이러한 특별수역의 한계를 공표한다.

(c) 연안국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규제를 위하여 특정해역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전술한 통보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국제기구에 통고한다. 이러한 추가법령은 배출 또는 항행상의 관행과 관련될 수 있으나, 외국선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 이외에 설계·구조·인원배치 또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령은 통보를 제출한 후 12개월내에 위의 국제기구가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통보를 제출한 후 15개월 이후에 외국선박에 적용된다.

7. 이 조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은 특히 배출 또는 배출가능성이 있는 해난을 비롯한 사고에 의하여 연안이나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대한 신속한 통보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포함한다.

제212조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

1. 각국은 대기로부터 또는 대기를 통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 권고관행과 절차 및 항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국의 주권 아래 있는 영공과 자국기를 계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

2. 각국은 이러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특히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지,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규칙과 기준 및 권고관행과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제6절 법령집행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제 207 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214조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제 208 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며 자국관할권하의 해저활동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과 제 60 조 및 제 80 조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하에 설치한 인공성, 설비 및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215조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심해저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제?부에 의거하여 수립된 국제규칙, 규정 및 절차의 집행은 제?부에 따라 규율된다.

제216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1. 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집행된다.

- (a)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내 또는 대륙붕상의 투기에 관하여는 연안국
- (b)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에 관하여는 기국
- (c) 자국의 영토나 연안정박시설에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실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

2. 다른 국가가 이 조에 의거하여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17조 [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1.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및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며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기국은 위반행위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이러한 규칙, 기준 및 법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한다.
2. 각국은 특히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설계, 구조, 장비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요건을 비롯하여 제 1 항에 규정된 국제규칙과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며 항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항행이 금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 제 1 항에 언급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요구되며 이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선상에 비치하도록 한다. 각국은 이러한 증명서가 선박의 실제상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정기적으로 검사되도록 보장한다. 다른 국가는 선박의 상태가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증명서를 선박의 상태에 관한 증거로 인정하고 그 증명서가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4. 선박이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 218 조, 제 220 조 및 제 228 조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기국은 위반발생장소나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주장된 위반에 관하여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5. 위반을 조사하는 기국은 사건의 상황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유용한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에라도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각국은 기국의 적절한 요청에 응하도록 노력한다.
6.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범하였다고 주장되는 위반을 조사한다. 기국은 위반주장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이러한 소송절차를 개시한다.

7. 기국은 취하여진 조치와 그 결과를 요청한 국가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보한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각국이 법령으로 규정한 형벌은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제218조 [기항국에 의한 법령집행]

1.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위반하여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행하여진 그 선박으로부터의 배출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른 소송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배출 위반이 발생한 국가나 기국 또는 배출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는 국가에 의하여 요청되거나 또는 위반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염을 초래하거나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배출 위반에 관하여 제기될 수 없다.

3.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이들 수역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위협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제 1 항에 언급된 배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할 경우, 실행가능한한 이에 응한다. 그 국가는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기국이 배출 위반에 관한 조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행가능한한 응한다.

4. 이 조에 따라 기항국이 수행한 조사기록은 기국이나 연안국이 있으면 기국이나 연안국에 전달된다. 위반이 연안국의 내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경우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기항국이 제기한 소송은 제 7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안국의 요청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증거와 기록은 기항국의 당국에 제공된 보석금이나 그 밖의 재정적 담보와 함께 연안국에 이송된다. 이러한 이송이 행하여지는 경우 기항국에서의 소송은 계속되지 아니한다.

제219조 [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감항성 관련조치]

제 7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국 항구나 연안 정박 시설에 있는 어떠한 선박이 선박의 감항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대해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실행가능한한 그 선박의 항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각국은 그 선박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수리장소까지만 운항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위반원인이 제거되는 즉시 항행을 계속하도록 허가한다.

제220조 [연안국에 의한 법령집행]

1. 선박이 어느 국가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위반이 자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때에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이나 적용가능한 국제규칙 또는 기준에 따라 제정된 자국 법령위반에 관하여 제 7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어느 국가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이 운항중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약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정된 국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제 II 부 제 3 절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위반 관련 선박의 물리적조사를 행할 수 있고, 증거가 허락하는 경우 제 7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를 항행중인 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 또는 이에 합치하고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선박에 대하여 선박식별, 등록항, 직전 및 다음 기항지에 관한 정보와 위반발생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각국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제 3 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5.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를 항행중인 선박이 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 3 항에 언급된 위반을 하여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실질적인 배출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그 선박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공한 정보가 명백히 실제상황과 어긋나는 경우 및 사건의 상황이 이러한 조사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물리적 조사를 행할 수 있다.

6. 어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이 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 3 항에 언급된 위반을 하여 연안국의 해안이나 관련이익, 또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배출을 행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그 국가는 제 7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증거가 허락하는 경우, 자국 법률에 따라 선박의 억류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또는 달리 합의된 바에 따라 보석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금융 담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수립되고, 연안국은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연안국은 그 선박의 출항을 허용한다.

8.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항은 제 211 조 제 6 항에 따라 제정된 국내 법령에도 적용된다.

제221조 [해난사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각국이 관습국제법이나 성문국제법에 따라, 중대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해난사고나 이러한 사고에 관련 행위로 인한 오염, 또는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자국의 해안이나 어로를 포함한 관계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상의 피해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영해 밖까지 취하고 집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난사고"라 함은 선박의 충돌, 좌초, 그 밖의 항행상의 사고 또는 그 밖에 선상이나 선외에서 사건으로서 선박이나 화물에 실질적인 피해나 급박한 피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 밖의 사건을 말한다.

제222조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의 영공에서, 또는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하여, 제 212 조 제 1 항과 그 밖의 이 협약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며, 항공의 안전에 관한 모든 관련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대기에 의한 또는 대

기를 통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국내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7절 보장제도

제223조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각국은 이 부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있어 증인신문 및 다른 국가의 당국이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증거의 채택을 용이하게 할 조치를 취하고, 권한있는 국제기구, 기국 및 위반으로 발생한 오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의 공식대표가 소송에 용이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소송절차에 출석하는 공식대표는 국내 법령이나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224조 [법령집행권한 행사]

이 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권한은 공무원이나 군함, 군용항공기나 정부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되고 식별가능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225조 [법령집행권한 행사상의 부정적 영향 방지의무]

각국은 이 협약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항행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 밖에 선박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선박을 안전하지 못한 항구나 정박지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해양환경을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아니한다.

제226조 [외국선박조사]

1. (a) 각국은 제 216 조, 제 218 조 및 제 220 조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긴요한 기간 이상 외국선박을 지체시키지 아니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검사도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그 선박에 비치하도록 요구된 증명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나 그 선박이 비치하고 있는 유사한 서류심사에 국한된다.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물리적 조사는 오직 그러한 심사가 수행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i) 선박이나 장비의 상태가 서류의 기재내용과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ii) 이러한 서류의 내용이 위반혐의를 확인하거나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iii) 선박이 유효한 증명서와 기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b) 조사에 의하여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을 위하여 적용되는 법령이나 국제규칙과 기준의 위반이 밝혀지는 경우 보석금이나 그 밖의 적절한 금융보증과 같은 합리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된다.

(c)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석방으로 해양환경에 불합리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되는 경우 선박의 석방을 거부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적절한 수리소로 항진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석방이 거부되거나 조건부화된 경우, 선박의 기국에 신속히 통보하고, 기국은 제XV부에 따라 선박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2. 각국은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물리적 조사를 피하기 위한 절차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27조 [외국선박 차별금지]

이 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선박을 형식상 또는 실질상으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28조 [소송의 정지·제한]

1. 소송을 제기한 국가의 영해 밖에서 외국선박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나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데 대하여 처벌하는 소송은, 그 소송이 연안국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관련 되었거나 문제된 기국이 자국 선박이 행한 위반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반복하여 무시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기국이 동일한 혐의에 대하여 처벌하는 소송을 시작한 경우 정지된다. 기국이 이 조에 따라 소송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그 기국은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국가에게 적절한 시기에 따라 사건의 모든 서류와 소송기록을 제공한다. 기국이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정지된 소송은 종료된다. 이러한 소송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이 지급된 경우 연안국은 정지된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된 보석금과 그 밖의 금융보증을 반환한다.

2. 외국선박에 형벌을 부과하는 소송은 위반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기될 수 없으며, 제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떠한 다른 국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이 조는 다른 국가에 의한 이전의 소송제기에 관계없이 기국이 자국법률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9조 [민사소송 제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0조 [벌금과 피고인의 인정된 권리의 존중]

1. 외국선박이 영해 밖에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국내법령이나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데 대하여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2. 영해에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오염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국내법령이나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한데 대하여는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

3. 외국선박이 형벌의 부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을 한데 대한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형사 피고인에게 인정된 권리는 존중된다.

제231조 [기국과 관련국에 대한 통지]

각국은 제 6 절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기국과 그 밖의 모든 관련국에 신속히 통고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모든 공식보고서를 기국에 제출한다. 다만, 영해에서 행하여진 위반에 관하여는 연안국의 이러한 의무는 소송에서 취한 조치에만 적용된다. 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및 가능한 경우 해양당국은 제 6 절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신속히 통보받는다.

제232조 [집행조치로 인한 국가책임]

각국은 제 6 절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한도를 넘을 경우, 이러한 조치 때문에 자국에게 귀책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국은 자국 법원에서 이러한 손해나 손실의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233조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관련 보장제도]

제 5 절, 제 6 절 및 제 7 절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0 절에 언급된 선박 이외의 외국선박이 제 42 조 제 1 항 (a)와 (b)에 언급된 법령을 위반하여 해협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 경우, 해협연안국은 적절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8절 결빙해역

제234조 [결빙해역]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오염이 생태학적 균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결빙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차별없는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령은 항행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9절 책 임

제235조 [책임]

1.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각국은 자국 관할권하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자국의 법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그 밖의 구제를 위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각국은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목적으로 손해평가와 손해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책임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이행과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 강제보험이나 보상기금 등 적절한 보상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10절 주권면제

제236조 [주권면제]

해양환경의 보호·보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해군보조함 및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협약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제11절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제237조 [해양환경 보호·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1. 이 부의 규정은 해양환경의 보호·보전과 관련하여 이미 체결된 특별협약과 협정에 따라 국가가 지는 특정한 의무 및 이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증진을 위한 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하여 특별협약에 따라 국가가 지는 특정한 의무는 이 협약의 일반원칙과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제 X III부 해양과학조사

제1절 총 칙

제238조 [해양과학조사권]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규정된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39조 [해양과학조사 촉진]

각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의 발전과 수행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제240조 [해양과학조사의 일반원칙]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있어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a) 해양과학조사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한다.
- (b) 해양과학조사는 이 협약에 합치하는 적절한 과학적 수단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 (c) 해양과학조사는 이 협약에 합치하는 다른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용과정에서 적절히 존중된다.
- (d)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을 위한 규칙을 비롯하여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모든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 수행된다.

제241조 [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로서의 해양과학조사활동 불인정]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제2절 국제협력

제242조 [국제협력 증진]

1. 각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주권 및 관할권 존중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의 바탕위에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이 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통제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자국으로부터, 또는 자국과 협력하여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국가에 제공한다.

제243조 [유리한 여건 조성]

각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양자협정 또는 다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해양환경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과정의 본질 및 그 상호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노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제244조 [정보·지식의 출판·보급]

1.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주요 제안사업과 그 사업의 목적에 관한 정보 및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공표, 보급한다.

2. 이를 위하여 각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과학자료 및 정보의 교류와 해양과학조사로부터 얻은 지식의 이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전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술·과학분야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독자적인 해양과학조사 능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증진한다.

제3절 해양과학조사의 수행과 촉진

제245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연안국은 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와 연안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수행된다.

제246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 연안국은 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2.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3. 연안국은, 통상적 상황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한 모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 사업에 동의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국은 이러한 동의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이나 절차를 확립한다.

4. 제 3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안국과 조사국간에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 상황은 있을 수 있다.

5. 그러나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실시사업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a)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물질의 반입을 수반하는 경우

(c) 제 60 조와 제 80 조에 언급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건조, 운용 또는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

(d) 제 248 조에 따라 조사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하여 전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조사국이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이전에 실시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연안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 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 밖의 대륙붕 중 연안국이 개발이나 세부적인 탐사작업이 수행되고 있거나 또한 상당한 기간내에 수행될 지역으로 언제라도 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해양과학조사사업에 대하여서는 제 5 항 (a)의 동의를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안국은 이러한 지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그러한 지역안에서의 세부활동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7. 제 6 항의 규정은 제 77 조에서 수립된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해양과학조사활동은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권리와 관할권의 행사로서 연안국이 실시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47조 [국제기구에 의하여 또는 국제기구의 후원하에 실시되는 해양과학조사사업]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국제기구와 양자협정을 체결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그 기구가 직접 또는 그 후원하에 해양과학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국제기구가 사업의 실시를 결정할 때 연안국이 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거나, 그 국제기구가 연안국에 대하여 사업을 통보한 후 4 개월내에 연안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안국이 합의된 내역에 따라 그러한 조사사업이 시행되도록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248조 [연안국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적어도 해양과학조사사업 개시예정일 6 개월 이전에 관계연안국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완전한 내역을 제공한다.

(a) 사업의 성질과 목적

(b) 사용될 수단과 방법 및 과학 장비의 설명서(선박의 명칭, 톤수, 형태 및 선급을 포함)

(c) 사업이 수행될 정확한 지리적 위치

(d) 조사선박의 최초 도착예정일과 최종 철수예정일, 또는 적절한 경우 장비의 설치 및 제거예정일

(e) 후원기관 명칭과 기관장, 사업책임자의 성명

(f) 연안국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고려되는 범위

제249조 [특정조건 준수 의무]

1.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조건을 준수한다.

(a) 연안국이 희망할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표를 파견할 연안국의 권리, 특히 실행가능한 경우 연안국 과학자에 대한 보수지급이나 조사사업비용을 분담할 의무없이 조사선박과 그 밖의 선박 또는 과학조사 시설에 탑승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대표를 파견할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한다.

(b)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한 신속히 예비보고서 및 조사 완료 후 최종적인 결과와 결론을 연안국에 제공한다.

(c)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자료와 견본을 연안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복사될 수 있는 자료와 과학적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될 수 있는 견본을 연안국에게 제공한다.

(d)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 견본 및 조사결과에의 평가를 연안국에 제공하거나 연안국이 이를 평가 또는 해석하는 것을 지원한다.

(e) 제 2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사결과가 가능한한 신속히 적절한 국내 적·국제적 경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 조사사업에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연안국에 통보한다.

(g)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조사가 완료되면 과학조사를 위한 설비나 장비를 철거한다.

2. 이 조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의 조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합의 요구를 비롯하여, 제 246 조 제 5 항에 따라 동의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위하여 연안국의 법령에 정한 조건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50조 [해양과학조사사업 관련 통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해양과학조사사업에 관한 통보는 적절한 공식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51조 [일반적 기준과 지침]

각국이 해양과학조사의 성질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제252조 [목시적 동의]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이 제 248 조에 따라 요청되는 정보가 연안국에 제공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양과학조사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 통보를 수령한 후 4 개월내에 조사를 행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에 다음 중의 어느 하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연안국이 제 246 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것

(b) 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는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가 명백히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

(c) 연안국이 제 248 조와 제 249 조에 언급된 조건과 정보에 관련된 보충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

(d) 국가나 국제기구가 이전에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제 249 조에 수립된 조건에 비추어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가 있다는 것

제253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나 중지]

1.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a) 조사활동이 제 248 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정보로서 연안국 동의를 기초가 되었던 정보에 따라 수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b)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사업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에 관한 제 249 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248 조 규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또 이러한 불이행이 조사사업이나 조사활동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연안국은 또한 제 1 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해양과학조사활동 수행을 허가받은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에 의한 정지나 중지결정 통보가 있으면 이러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조사활동을 종료한다.

5.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가 제 248 조와 제 249 조에 따른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연안국은 제 1 항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고 해양과 조사활동이 계속되도록 허용한다.

제254조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의 권리]

1. 제 246 조 제 3 항에 언급된 해양과학조사사업계획을 연안국에 제출한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안된 조사사업계획을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에 통보하고 또한 연안국에도 통보한다.

2. 제 246 조와 그 밖의 이 협약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연안국이 제안된 해양과학조사사업에 동의한 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

리국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또한 적절한 경우, 제 248 조와 제 249 조 제 1 항 (f)에 명시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3. 앞에 언급된 인접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은 이들이 임명하고 연안국이 반대 하지 아니하는 자격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관계 연안국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간에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게 합의된 사업조건에 따라 제안된 해양과학조사사업에 실행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여 부여받는다.

4.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앞에 언급된 인접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 249 조 제 2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 249 조 제 1 항(d)에 명시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제255조 [해양과학조사촉진 및 조사선 지원을 위한 조치]

각국은 자국의 영해 밖에서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한 경우, 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해양과학조사선의 자국 항구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제256조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부의 규정에 따라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57조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4절 해양환경내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

제258조 [설치와 사용]

해양환경의 모든 수역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은 이러한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관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제259조 [법적지위]

이 절에 언급된 시설이나 장비는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그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0조 [안전수역]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조사를 위한 시설의 주위에 500 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폭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선박이 이러한 안전수역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261조 [해운항로 불가침]

어떠한 종류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와 사용도 확립된 국제해운항로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62조 [식별표지와 경고신호]

이 절에 언급된 시설과 장비는 등록국이나 소속 국제기구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를 부착하며,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해상안전과 항공운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적절한 경고신호를 갖춘다.

제5절 책 임

제263조 [책임]

1.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들이 수행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가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2.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다른 국가나 그 국가의 자연인에 의하여 법인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이 협약을 위반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들이 수행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로 해양환경오염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제 235 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6 절 분쟁해결과 잠정조치

제264조 [분쟁해결]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X V부 제 2 절과 제 3 절에 따라 해결된다.

제265조 [잠정조치]

해양과학조사사업 수행을 승인받은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X V부 제 2 절과 제 3 절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계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없이 조사활동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제 X IV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제1절 총 칙

제266조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의 촉진]

1. 각국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해양과학 및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적극 증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협력한다.
2.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해양환경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이 협약과 양립하는 그 밖의 활동에 관하여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이를 요청한 국가, 특히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기술분야의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3. 각국은 모든 당사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해양기술 이전에 유리한 경제적, 법률적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제267조 [적법한 이익의 보호]

각국은, 제 266 조에 따른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특히 해양기술의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이익을 비롯한 모든 적법한 이익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268조 [기본목표]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증진한다.

- (a) 해양기술 지식의 획득·평가·보급 및 이러한 정보와 자료의 이용
- (b) 적절한 해양기술 개발
- (c) 해양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반의 개발
- (d) 개발도상국의 국민, 특히 최저개발국 국민의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 (e) 모든 수준, 특히 지역적·소지역적 및 양자차원을 비롯한 모든 차원에서의 국제협력

제269조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각국은 제 268 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특히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a) 해양기술분야에서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 국과 지리적 불리국에 대하여, 또한 해양과학과 해양자원의 탐사, 개발에 있어서 자국의 기술력을 확립,

발전시킬 수 없거나 그러한 기술의 기반을 발전시킬 수 없는 그 밖의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해양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협력계획의 수립

(b) 협정, 계약 및 그 밖의 유사한 약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체결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의 조장

(c) 과학·기술관련 주제, 특히 해양기술 이전을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회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

(d) 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 교류의 증진

(e) 사업수행 및 합작사업과 그 밖의 형태의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의 증진

제2절 국제협력

제270조 [국제협력의 방법과 수단]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해양과학조사, 특히 새로운 분야의 해양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해양연구개발을 위한 적절한 국제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자적·지역적 또는 다자적 계획과 새로운 확대 계획을 통하여 수행된다.

제271조 [지침과 기준]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조직을 통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양자차원에서 또는 국제기구와 그 밖의 국제회의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해양기술 이전의 지침과 기준의 수립을 촉진한다.

제272조 [국제적 활동계획의 조정]

각국은 해양기술 이전분야에서 개발도상국, 특히 내륙국과 지리적불리국의 이익과 필요를 고려하여 권한있는 각 국제기구가 지역적·세계적 계획을 비롯한 각 국제기구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73조 [국제기구·해저기구와의 협력]

각국은 심해저활동 관련 기능과 해양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그 국민, 개발청에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 및 해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274조 [해저기구의 목표]

해저기구는 특히 기술의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적법한 이익을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다음을 보장한다.

(a) 공평한 지리적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안국, 내륙국 또는 지리적불리국 여부에 관계 없이 개발도상국의 국민을 훈련목적상 해저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구성되는 관리직원, 연구직원 및 기술직원으로 채용한다.

(b) 관련장비, 기계, 장치 및 공정에 관한 기술서류는 모든 국가, 특히 이 분야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해저기구는 해양기술분야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의한 해양기술분야의 기술지원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그 국민이 직업훈련을 포함한 필요한 기능과 지식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한다.

(d) 이 분야에서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재정상의 약정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 공정, 공장설비 및 그밖의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제3절 국내·지역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제275조 [국내연구소의 설립]

1. 각국은,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해저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연안국의 해양과학조사 실시를 장려·발전시키기 위하여, 또한 개발도상 연안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자국의 해양자원을 이용·보전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국내에 해양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고 기존 국내연구소가 강화되도록 장려한다.

2.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해저기구를 통하여, 원조를 필요로하고 요청하는 국가에게, 높은 수준의 훈련시설, 필요한 장비·기능과 기술지식 및 기술전문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내연구소의 설립·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제276조 [지역연구소의 설립]

1.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 해저기구 및 국내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조정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를 장려, 촉진시키고 해양기술 이전을 조장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내에 지역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증진한다.

2. 역내 모든 국가는 지역연구소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연구소와 협력한다.

제277조 [지역연구소의 기능]

이러한 지역연구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포함한 해양생물학, 해양학, 수로학, 공학, 해저지질탐사, 채광 및 탈염기술 등 해양과학기술연구의 여러 분야의 모든 수준에서의 훈련 및 교육계획
- (b) 경영연구
- (c)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오염의 방지·경감·통제에 관한 연구계획
- (d) 지역회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조직
- (e)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분석
- (f) 해양과학기술조사 결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에 의하여 신속히 보급
- (g)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공표와 그러한 정책의 체계적 비교연구
- (h) 기술판매, 계약 및 특허에 관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체계화
- (i) 지역내 다른 국가와의 기술협력

제4절 국제기구간 협력

제278조 [국제기구간 협력]

이 부 및 제XIII부에 언급된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직접적으로 또는 그 국제기구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부에 따른 임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X V 부 분쟁의 해결

제1절 총 칙

제279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의무]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을 국제연합헌장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헌장 제 33 조 제 1 항에 제시된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다.

제280조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81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절차는 그 수단에 의하여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밖의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당사자가 기한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 제 1 항은 그 기한이 만료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82조 [일반협정·지역협정·양자협정상의 의무]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들이 일반협정·지역협정·양자협정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력있는 결정을 초래하는 절차에 그 분쟁을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에 규정된 절차 대신 그 절차가 적용된다.

제283조 [의견교환의무]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교섭이나 그 밖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신속히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해결에 도달하였으나 해결의 이행방식에 관한 협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경우, 의견을 신속히 교환한다.

제284조 [조정]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당사자인 당사국은 제Ⅴ부속서 제 1 절에 규정된 절차나 그 밖의 조정절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분쟁을 조정에 회부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이 수락되고 당사자가 적용할 조정절차에 합의한 경우, 어느 당사자라도 그 분쟁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3. 이러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은 합의된 조정절차에 따라서만 종료될 수 있다.

제285조 [제11부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이 절의 적용]

이 절은 제 11 부 제 5 절에 의거하여 이 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한다. 국가가 아닌 주체가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이 절을 준용한다.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286조 [이 절에 따른 절차의 적용]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제 1 절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 3 절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절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287조 [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 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a) 제Ⅵ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 (b) 국제사법재판소
 - (c) 제Ⅶ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 (d) 제Ⅷ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2. 제 1 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제7부 제 5 절에 규정된 범위와 방식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유효한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제Ⅶ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그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제Ⅶ부속서에 따른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다.
6. 제 1 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취소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 3 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7. 새로운 선언, 선언의 취소 또는 종료의 통고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한, 이 조에 따른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선언과 통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당사국에 전달한다.

제288조 [관할권]

1. 제 287 조에 언급된 재판소는 이 부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는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제 287 조에 언급된 재판소는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국제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국제협정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3. 제Ⅶ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와 제7부 제 5 절에 언급된 그 밖의 모든 재판부나 중재재판소는 제7부 제 5 절에 따라 회부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4.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문제는 그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89조 [전문가]

과학·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분쟁에 있어서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재판소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소의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제Ⅷ부속서 제 2 조에 따라 준비된 관련 명부로부터 투표권없이 재판에 참여하는 2 인 이상의 과학·기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290조 [잠정조치]

1. 어느 재판소에 정당하게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그 재판소가 일응 이 부나 제?부 제 5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잠정조치는 이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변화하거나 소멸하는 즉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 잠정조치는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후 이 조에 따라 명령·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분쟁당사자와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당사국에게 잠정조치의 명령, 변경 또는 철회를 즉시 통지한다.

5. 이 절에 따라 분쟁이 회부되는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는재판소가, 만일 잠정조치의 요청이 있은 후 2 주일 이내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또는 심해저활동에 관하여서는 해저 분쟁재판부)가, 이 조에 따라 잠정조치를 명령,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일응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분쟁이 회부된 중재재판소는 구성 즉시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 따라 그 잠정조치를 변경, 철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6. 분쟁당사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명령된 잠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제291조 [분쟁해결절차의 개방]

1. 이 부에 규정된 모든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2. 이 부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이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 개방된다.

제292조 [선박·선원의 신속한 석방]

1. 어느 한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고,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보증이 예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국이 선박이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이 협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당사국간 합의가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억류로부터의 석방문제는 당사국간 합의된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만일 그러한 합의가 억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 287 조에 따라 억류국이 수락한 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석방신청은 선박의 기국에 의하여 또는 기국을 대리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재판소는 지체없이 석방신청을 처리하고, 선박과 그 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국내법정에서의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석방문제만을 처리한다. 억류국의 당국은 선박이나 승무원을 언제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재판소가 결정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금융보증이 예치되는 즉시 억류국의 당국은 선박이나 선원들의 석방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한다.

제293조 [적용법규]

1.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적용한다.

2.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 1 항은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94조 [예비절차]

1. 제 287 조에 규정된 재판소에 제 297 조에 언급된 분쟁에 관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재판소는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가 법적 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나 청구에 일응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판소의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재판소는 청구가 법적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일응 근거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재판소는 신청을 접수한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그 신청을 신속히 통지하여야하며 다른 당사자가 제 1 항에 따라 재판소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가능한 절차규칙에 따라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5조 [국내적 구제의 완료]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국제법상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규정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제296조 [판결의 종국성과 구속력]

1.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2. 어떠한 판결도 그 특정 분쟁과 당사자 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절 적용의 제한과 예외

제297조 [제2절 적용의 제한]

1. 이 협약에 규정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음의 각 경우 제 2 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a) 연안국이 항해·상공비행의 자유와 권리, 해저전선·해저관선 부설의 자유와 권리 또는 제 58 조에 명시된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권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b) 어느 한 국가가 앞에 언급된 자유, 권리 또는 이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부합하여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c) 연안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나 외교 회의를 통하여 이 협약에 부합되게 수립되어 연안국에 적용되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특정의 규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2. (a)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이 협약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 2 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다음의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제 2 절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i) 제 246 조에 따르는 연안국의 권리나 재량권의 행사
 - (ii) 제 253 조에 따르는 조사계획의 정지나 중지를 명령하는 연안국의 결정
 - (b) 특정 조사계획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 246 조와 제 253 조에 의한 권리를 이 협약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국이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V 부속서 제 2 절에 규정된 조정에 회부되어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제 246 조 제 6 항에 언급된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나 제 246 조 제 5 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문제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a) 어업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 2 절에 따라 해결된다. 다만,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 및 그 행사(허용어획량, 자국의 어획능력, 다른 국가에 대한 잉여량 할당 및 자국의 보존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결정할 재량권 포함)에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해결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b) 이 부 제 1 절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 V 부속서 제 2 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된다.
- (i) 연안국이 적절한 보존·관리조치를 통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ii) 연안국이 다른 국가의 어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종의 허용어획량과 자국의 생물자원 어획능력 결정을 그 다른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
 - (iii) 연안국이 존재한다고 선언한 잉여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 62 조, 제 69 조 및 제 70 조에 따라, 또한 연안국이 이 협약에 부합되게 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할당할 것을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
- (c)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그 재량권으로써 연안국의 재량권을 대체할 수 없다.
- (d)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송부된다.
- (e) 당사국은, 제 69 조와 제 70 조에 따라 협정을 교섭함에 있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조

항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98조 [제2절 적용의 선택적 예외]

1. 국가는 제 1 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 협약 서명 비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다음 분쟁의 범주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관하여 제 2 절에 규정된 절차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선언할 수 있다.

(a) (i)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 15 조, 제 74 조 및 제 83 조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과 관련된 분쟁 다만, 이러한 분쟁이 이 협약 발효후 발생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선언을 행한 국가는 그 사건을 제V부속서 제 2 절에 따른 조정에 회부할 것을 수락하여야 하나,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이러한 회부로부터 제외된다.

(ii) 조정위원회가 보고서(그 근거가 되는 이유 명시)를 제출한 후, 당사자는 이러한 보고서를 기초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교섭한다.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 동의에 의해 제 2 절에 규정된 어느 한 절차에 그 문제를 회부한다.

(iii) 이 호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된 해양경계분쟁, 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어떠한 해양경계분쟁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 군사활동(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군사활동 포함)에 관한 분쟁 및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집행 활동에 관한 분쟁으로서 제 297 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된 분쟁

(c)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의제로부터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규정된 수단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 항에 따른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선언에 따라 제외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분쟁으로서 제외된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그 다른 당사국의 동의없이 이 협약의 절차에 회부할 수 없다.
4. 어느 한 당사국이 제 1 항 (a)에 따라 선언을 행한 경우, 다른 모든 당사국은 제외된 범주에 속하는 분쟁을 선언당사국을 상대방으로하여 그 선언에 명시된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5. 새로운 선언이나 선언의 철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계류중인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6. 이 조에 따라 행한 선언이나 그 철회의 통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그 사본을 전달한다.

제299조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

1. 제 297 조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 298 조에 따른 선언으로 제 2 절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로부터 제외된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만 이러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2.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절차에 합의하거나 우호적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 X VI부 일반규정

제300조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관할권 및 자유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제301조 [해양의 평화적 이용]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제302조 [정보의 공개]

이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3조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유물]

1. 각국은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역사적 유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2. 이러한 유물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제 33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의 승인없이 제 33 조에 규정된 수역의 해저로부터 유물을 반출하는 것을 제 33 조에 언급된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자국법령 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확인가능한 소유주의 권리, 해난구조법 또는 그 밖의 해사규칙, 또는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고고학적·역사적 유물의 보호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과 국제법규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04조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기존 규칙의 적용과 장래 이러한 규칙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X VII 부 최종조항

제305조 [서명]

1. 이 협약은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모든 국가

(b) 국제연합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

(c)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 1514(XV)호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여 감독되고 승인되는 민족자결행위로서 그 지위를 선택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그러한 사항에 관한 조약체결권 포함)을 가지는 모든 자치연합국

(d) 각각의 연합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조약 체결권 포함)을 가지는 모든 자치연합국

(e) 완전한 국내자치를 누리고 있어 국제연합에 의하여 그러하게 승인되고 있으나,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 1514(XV)호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그러한 사항에 관한 조약체결권 포함)을 가지는 모든 영토

(f) 제IX부속서에 따른 국제기구

2. 이 협약은 1984년 12월 9일까지는 자마йка 외무부에서,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12월 9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06조 [비준과 공식확인]

이 협약은 국가 및 제 305 조 제 1 항 (b), (c), (d), (e)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에 의하여 비준되고 제 305 조 제 1 항 (f)에 언급된 주체에 의하여 제IX부속서에 따라 공식확인되어야 한다. 비준서와 공식확인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07조 [가입]

이 협약은 국가 및 제 305 조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305 조 제 1 항 (f)에 규정된 주체에 의한 가입은 제IX부속서에 따른다.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08조 [발효]

1. 이 협약은 60 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 개월 후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60 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 일째 발효한다.
3. 해저기구총회는 이 협약의 발효일에 개최되며 해저기구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한다. 이사회 제 1 회기는 제 161 조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 161 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4. 준비위원회에 의하여 기초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제 3 부에 따라 해저기구가 정식 채택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5. 해저기구와 그 기관은 선행투자자와 관련한 제 3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결의 II와 그 결의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

제309조 [유보와 예외]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유보나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10조 [선언과 성명]

제 309 조는 어떠한 국가가 특히 자국의 국내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그 표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규정의 법적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고 의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1조 [다른 협약·국제협정과 관계]

1. 이 협약은 당사국간에 있어 1958 년 4 월 29 일자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우선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3. 2 개국 이상의 당사국은 오직 그들 상호관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서 이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정지시키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은 이 협약의 목적과 대상의 효과적 이행과 양립하지 않는 조항 일탈에 관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이 협약

에 구현된 기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협정의 규정이 이 협약상 다른 당사국의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 3 항에 언급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수탁자를 통하여 협정체결 의사 및 그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에 대한 변경이나 정지를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5. 이 조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보장되어 있는 국제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은 제 136 조에 규정된 인류공동유산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기본원칙을 일탈하는 어떠한 협정의 당사국도 되지 아니한다는데 합의한다.

제312조 [개정]

1. 당사국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10 년이 지난 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 관련규정을 제외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개정안을 다룰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통보 회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1/2 이상이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사무총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2. 개정회의에 적용하는 의사결정절차는 그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 3 차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 적용된 의사결정절차와 동일하다. 개정회의는 어떠한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총의에 의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이 끝날 때까지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313조 [약식절차에 의한 개정]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 관련규정을 제외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 조에 규정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채택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2. 이러한 통보가 회람된 후 12 개월 이내에 어느 한 당사국이 개정안에 대하여 또는 약식절차를 통한 개정안 채택 제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즉시 이를 통고한다.

3. 이러한 통보가 회람된 후 12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안에 대하여 또는 약식절차를 통한 개정안 채택 제안에 근거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정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개정안이 채택되었음을 통고한다.

제314조 [심해저활동에만 관련된 규정의 개정]

1. 당사국은 해저기구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통하여 심해저활동에만 관련된 협약규정(제VI부속서 제 4 절을 포함)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기관에서 당사국 대표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할 전권을 가진다. 이사회와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이사회와 총회는 그 개정안이 제 155 조에 따른 재검토회의 이전에는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4 절 참조>

제315조 [개정안의 서명·비준·가입과 정보]

1.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개정안 자체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채택일로부터 12 개월동안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2. 제 306 조, 제 307 조 및 제 320 조는 이 협약에 대한 모든 개정에 적용된다.

제316조 [개정의 발효]

1. 제 5 항에 언급된 개정을 제외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은 당사국의 3분의 2 또는 60 개 당사국 중 더 많은 수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 일째 되는 날에 이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2. 개정은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 조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비준·가입을 필요로 함을 규정할 수 있다.

3. 필요한 수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제 1 항에 규정된 개정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 일째 발효한다.

4. 제 1 항에 따른 개정의 발효이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a)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본다.

(b) 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 협약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국으로 본다.

5. 심해저활동에만 관련된 개정과 제VI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당사국 4분의3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모든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6. 제 5 항에 따른 개정의 발효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본다.

제317조 [폐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하고 그 이유를 명시할 수 있다. 폐기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폐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폐기는 통고서에 폐기일자를 더 늦게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고수령일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유효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폐기를 이유로 당사국이었던 중에 발생한 재정적 의무와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하며, 폐기는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종료되기 전에 이 협약의 시행을 통하여 발생한 그 당사국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폐기는 이 협약에 구현된 의무로서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국제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8조 [부속서의 지위]

부속서는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이나 협약의 각부에 대한 언급은 이와 관련된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319조 [수탁자]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이에 대한 개정의 수탁자가 된다.

2. 사무총장은 수탁자로서의 기능 이외에 다음을 수행한다.

(a)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 성격의 문제를 모든 당사국, 해저기구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보고

(b) 이 협약에 대한 비준, 공식확인, 가입, 개정 및 폐기에 관하여 해저기구에 통고

(c) 제 311 조 제 4 항에 따른 협정을 당사국에 통고

(d)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개정의 비준이나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회람

(e)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당사국회의의 소집

3. (a) 사무총장은 제 156 조에 언급된 참관인에게 다음을 전달한다.

(i) 제 2 항 (a)에 언급된 보고

(ii) 제 2 항 (b)와 (c)에 언급된 통고

(iii) 제 2 항 (d)에 언급된 개정문안(참관인 참고용)

(b) 사무총장은 이러한 참관인을 제 2 항 (e)에 언급된 당사국회의에 참관인으로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제320조 [정보]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하는 이 협약의 원본은 제 305 조 제 2 항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대표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작성되었다.

제 I 부속서 고도회유성어종

1. 날개다랭이 : *Thunnus alalunga*.
2. 참다랭이 : *Thunnus thynnus*.
3. 눈다랭이 : *Thunnus obesus*.
4. 가다랭이 : *Katsuwonus pelamis*.
5. 황다랭이 : *Thunnus albacares*.
6. 검은지느러미다랭이 : *Thunnus atlanticus*.
7. 작은다랭이류 : *Euthynnus alletteratus*; *Euthynnus affinis*.
8. 남부참다랭이 : *Thunnus maccoyii*.
9. 물치다래류 : *Auxis thazard*; *Auxis rochei*.
10. 새다래류 : Family Bramidae
11. 새치류 : *Tetrapturus angustirostris*; *Tetrapturus belone*; *Tetrapturus pfluegeri*; *Tetrapturus albidus*; 청새치 *Tetrapturus audax*; *tetrapturus georgei*; *Makaira mazara*; 백새치 *Makaira indica*; *Makaira nigricans*.
12. 돛새치류 : 돛새치 *Istiophorus platypterus*; *Istiophorus albicans*.
13. 황새치 : 황새치 *Xiphias gladius*.
- 14.공치류 : *Scomberesox saurus*; *Cololabis saira*; *Cololabis adocetus*; *Scomberesox saurus scombroides*.
- 15.만새기류 : 만새기 *Coryphaena hippurus*; 줄만새기; *Coryphaena equiselis*.
16. 원양성 상어류 : *Hexanchus griseus*; 돌목상어 *Cetorhinus maximus*; 환도상 어류 Family Alopiidae; 고래상어 *Rhincodon typus*; 흉상어과 Family Carcharhinidae; 귀상어과 Family Sphyrnidae; Family Isurida.
- 17.고래류:향고래과 Family Physeteridae; 긴수염 고래과 Family Balaenopteridae; Family Balaenidae; 쇠고래과 Family Eschrichtiidae; Family Monodontidae; Family Ziphiidae; 물돼지과 Family Delphinidae.

제 II 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

제 1 조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200 해리 밖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를 다음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제 2 조

1. 위원회는 2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이 자국민중에서 선출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또는 수리학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개인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 최초의 선거는 가능한한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의 최소한 3 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대하여 3 개월 이내에 적절한 지역적 협의를 거친 후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한다.

3. 위원회위원 선거는 국제연합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전체 당사국의 2/3 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이 회의에서는 지명된 사람 중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대표 투표의 2/3 이상을 얻은 사람은 위원으로 선출된다. 각각의 지리적 지역으로부터 3 명 이상의 위원이 선출된다.

4. 위원회 위원은 5 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은 그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비용을 부담한다. 관계연안국은 이 부속서 제 3 조 제 1 항 (b)에 언급된 조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공한다.

제 3 조

1.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200 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륙붕의바깥한계에 관하여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 76 조와 1980 년 8 월 29 일 제 3 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양해선언에 따라 권고를 행한다.

(b) (a)에 언급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관계연안국이 요청하는 경우 과학적, 기술적 조연을 제공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고려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 국제수로기구 및 그 밖의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제 4 조

연안국이 제 76 조에 따라 200 해리 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기술적 자료와 함께 가능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0 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연안국은 이와 함께 과학적·기술적 조연을 자국에 제공한 모든 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밝힌다.

제 5 조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연안국에 의한 개별적인 회부의 특별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되게 임명된 7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통하여 직무를 행한다. 회부를 한 연안국의 국민인 위원회 위원이나 한계확정에 관하여 과학적·기술적 조연을 제공하여 연안국을 도운 위원은 그 회부를 다루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회부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절차에 위원 자격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에 회부를 행한 연안국은 자국 대표를 관련 의사절차에 투표권없이 참여하도록 파견할 수 있다.

제 6 조

1.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2. 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위원의 2/3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위원회의 권고는 회부를 행한 연안국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제 7 조

연안국은 제 76 조 제 8 항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한다.

제 8 조

연안국이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안국은 수정된 회부 또는 새로운 회부를 합리적 기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9 조

위원회의 행위는 대항국 또는 인접국간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III부속서 개괄탐사, 탐사및 개발의 기본조건

제1조 [광물에 대한 소유권]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채취하였을때 이전된다.

제2조 [개괄탐사]

1. (a)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개괄탐사를 장려한다.

(b)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제 143 조와 제 144 조에 언급된 훈련계획에 있어서의 협력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며 그 이행에 관한 해저기구의 검증을 수락한다는 서면에 의한 만족할만한 보증을 해저기구가 받은 후에만 실시된다. 동시에 개괄탐사 예정자는 개괄탐사가 실시될 예정지역을 해저기구에 통고한다.

(c) 개괄탐사는 1 인이상의 개괄탐사자에 의하여 동일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2. 개괄탐사는 개괄탐사자에게 자원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괄탐사자는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양의 광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제3조 [탐사와 개발]

1. 개발청, 당사국 및 제 153 조 제 2 항 (b)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는 심해저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해저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유보 지역에 대한 그 밖의 주체의 신청은 이 부속서 제 9 조의 추가요건에 따른다.

3. 탐사와 개발은 제 153 조 제 3 항에 언급되고 해저기구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역내에서만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4. 승인된 모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a) 이 협약과 개발청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b) 제 153 조 제 4 항에 따라 해저기구가 실시하는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제를 제공한다.

(c)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내에 있는 구체적인 명시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신청자가 탐

사단계나 개발단계만을 다루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은 그 단계에서만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5.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은 해저기구가 승인 하는 바에 따라 해저기구와 신청자간 체결된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이행협정 부속서 제 2 절 제 4 항 참조>

제4조 [신청자의 자격]

1. 개발청 이외의 신청자는 제 153 조 제 2 항 (b)에 따른 국적을 가지거나 통제와 보증을 받고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합치하고 그 절차에 따르는 경우 자격이 인정된다.

2. 제 6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자격기준은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그리고 해저기구와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실적과 관련된다.

3. 각 신청자는 본국의 보증을 받는다. 다만, 수개국의 주체로 구성되는 합명회사나 컨소시엄의 경우와 같이 신청자가 복수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모든 관계당사국이 그 신청자를 보증하며, 신청자가 다른 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하게 통제되는 경우 두 당사국이 그 신청자를 보증한다. 보증요건 충족의 기준과 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로 정한다.

4. 보증국은 이와 같이 보증된 계약자가 이 협약상의 의무와 계약조건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제 139 조에 따라 자국법체계내에서 진다. 그러나 보증국이 자국법체계내에서 자국 관할 아래있는 자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으로 적절한 법령을 채택하고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국은 자국이 보증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신청자인 경우 자격을 평가하는 절차는 국가로서의 특성을 고려한다.

6. 모든 신청자의 자격기준에는 예외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제 11 부의 규정, 해저기구의 규칙·규정 및 절차, 해저기구기관의 결정과 해저기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창설된 적용가능한 의무를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하고 준수한다.

(b)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저기구의 심해저활동에 대한 규제를 수락한다.

(c) 계약상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보증을 해저기구에 제출한다.

(d) 이 부속서 제 5 조에 언급된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 [기술이전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1. 모든 신청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해저활동의 수행에 사용될 장비와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러한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타 비재산권적 관련정보와 그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해저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조업자는 본질적인 기술상의 변화나 혁신이 도입될 때마다, 제 1 항에 따라 제공된 설명과 정보의 수정을 해저기구에 알린다.

3. 심해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 계약자에 의한 다음 책임을 포함 한다.

(a)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수행에 있어서 사용하며 또한 그가 법적으로 이전할 권리를 소유한 기술은 해저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개발청이 이를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계약자가 개발청과 교섭을 거쳐 계약을 보충하는 특별약정으로 규정한 허가조건이나 그 밖의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임은 개발청이 공개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하게 효율적이고 유용한 기술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b)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공 개시장에서 획득할 수 없으며 또한 (a)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술에 관하여서는, 그 기술의 소유권자가 그 기술을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계약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개발청이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서면 보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심해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c) 개발청이 요청하고 또한 계약자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서도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자가 사용하는 기술로서, 계약자가 법적 권리를 이전할 다른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공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청에게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계약자는 집행력을 가지는 계약에 의

하여 기술 소유권자로부터 취득한다. 계약자와 기술 소유권자간에 실질적인 법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관계의 긴밀한 정도와 규제력 또는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한다. 계약자가 소유권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법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추후 사업계획에 관하여 계약자의 승인 신청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d) 개발청이 기술소유권자와 직접 교섭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청의 요청에 따라 허가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협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b)에 언급된 기술을 개발청이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e) 이 부속서 제 9 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a), (b), (c) 및 (d)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계약자가 신청한 지역 중 이 부속서 제 8 조에 따라 유보된 부분의 개발에 국한되며,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그룹이구하는 계약상의 활동은 제 3 국이나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한 의무는 개발청이 기술의 이전을 요청하지 아니한 계약자나 기술을 개발청에 이전하지 아니한 계약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4. 제 3 항이 요구하는 책임에 관한 분쟁은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부에 의한 강제적 해결에 따르며, 이러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 이 부속서 제 18 조에 따라 계약의 정지나 해지 또는 벌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나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정하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르는 구속력 있는 상사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계약자의 청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저기구가 이 부속서 제 18 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청약을 이러한 범위에 속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청약자에게 45 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5. 개발청이 심해저로부터 광물의 채취와 가공을 제때에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나 총회는 심해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국이나 주체를 보증한 당사국, 또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으로 구성된 당사국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국들은 함께 협의를 하고 이러한 기술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개발청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법체계내에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개발청과 합작사업의 경우 기술이전은 합작사업협정의 조건에 따른다.

7. 제 3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책임은 개발청의 상업적 생산개시후 10 년까지 해저활동의 수행을 위한 각 계약속에 포함되며, 그러한 기간동안 원용될 수 있다.

8.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함은 실행가능한 체제를 조직·유지·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범·설계·운영지침·훈련 및 기술적 자문과 원조를 포함한 전문장비와 기술지식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이지 아니하게 이를 사용할 법적 권리를 말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 개월 후, 그 이후에는 4 개월마다 해저기구는 제출된 사업 계획의 심사를 시작한다.

2.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해저기구는 다음을 우선 확인한다.

(a)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 4 조에 따라 마련된 신청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제 4 조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보증을 해저기구에 대하여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절차를 불이행하였거나 또는 그 책임과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45 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b)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 4 조에 언급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출된 모든 사업계획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과 작업조건·기부금 및 기술이전책임을 포함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이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해저기구는 그 사업계획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확실적이고 무차별적인 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가 승인된 사업계획 또는 이미 제출되었거나 아직 해저기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b)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 또는 전체가 제 162 조 제 2 항 (x)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c) 제출된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보증된 경우

(i)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40 만 평방km²의 원형지역을 설정할 경우, 사업계획 신청대상으로 된 지역의 일부가 면적상 그 원형지역의 30 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보지역 안에 있는 복합광물 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ii)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과 함께 고려할 때, 유보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제 162 조 제 2 항 (x)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으로부터 제외되지 아니한 전체 해저지역의 2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는 비유보지역안의 복합금 속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4. 제 3 항 (c)에 언급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명회사나 컨소시엄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부속서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각 관련 후원당사국이 일정 비율로 보증한다. 해저기구는 제 3 항 (c)에 언급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어떠한 당사국이나 당사국이 보증한 주체가 심해저활동의 수행을 독점하게 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심해저활동을 배제하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제 3 항 (a)에도 불구하고 제 151 조 제 3 항에 명시된 잠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저기구는 제출된 지역에 대한 신청자의 선정에 있어서 어느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치하는 다른 절차와 기준을 형평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보장한다.

제7조 [생산인가를 위한 신청자 선정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 개월 후, 그 이후에는 4 개월마다, 해저기구는 그 기간의 직전 기간에 제출된 생산인가 신청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신청 모두가 생산한도를 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 151 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한 해저기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인가될 수 있는 경우 해저기구는 신청된 인가를 발급한다.

2. 제 151 조 제 2 항부터 제 7 항에 언급된 생산한도로 인하여 또는 제 151 조 제 1 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해저기구의 의무로 인하여 신청자 중에서 생산인가를 위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객관적이고 무차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선정한다.

3. 제 2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다음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a)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자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상의 실적을 고려하여 이행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보증을 한 신청자

(b) 상업생산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에 보다 빨리 재정적 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c) 개괄탐사나 탐사에 최대의 자원과 노력을 투자한 신청자

4. 어느 기간에도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생산인가를 얻을 때까지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5. 선정은 어떠한 국가나 체제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사회적·경제적 체제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들이 심해저활동에 참여 하고 그 활동의 독점을 방지할 기회를 높일 필요를 고려하여 행한다.

6. 개발중인 유보지역의 수가 비유보지역의 수보다 적은 경우 유보지역에 관한 생산인가 신청은 우선권을 가진다.

7. 이 조에 규정된 결정은 매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한 빨리 행하여진다.

제8조 [지역의 유보]

각 신청은 개발청이 제출한 것이거나 그 밖의 주체가 유보지역에 대하여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연속된 지역일 필요없이 2 개의 광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그 지역을 동등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2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경위도표를 표시하며, 이 두 부분에 관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이 부속서 제 17 조에 따른 해저기구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복합금속단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는 지도 작성·표본제출·단괴의 부존량 및 광물성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해저기구는 자료를 받은 후 45 일 이내에 어떠한 부분이 해저기구가 오로지 개발청을 통하여 또는 개발도상국과 제휴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보될 부분인가를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을 위한 기간은 해저기구가 독자적인 전문가에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45 일간 연장될 수 있다. 지정된 지역은 비유보지역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계약이 서명되는 즉시 유보지역으로 된다.

제9조 [유보지역에서의 활동]

1. 개발청은 각 유보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진다. 언제라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4 조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통고받은 경우 개발청은 합리적 기간내에 결정을 행한다. 개발청은 이러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나 주체와의 합작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제Ⅳ부속서 제 12 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개발청은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제 153 조 제 2 항 (b)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주체와도 합작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발청은 이러한 합작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그 국민에게 실효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3.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이러한 계약과 합작사업에 관한 실제적, 절차적 요건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또는 이러한 당사국이 보증하고 이러한 당사국이나 신청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또는 이들의 집합체는 유보지역에 관하여 이 부속서 제 6 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할 의도가 있음을 해저기구에 알릴 수 있다. 개발청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유보지역에서의 활동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심사되어야 한다.

제10조 [신청자간 우선순위]

이 부속서 제 3 조 제 4 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탐사만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조업자는 동일지역 및 그 자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조업자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철회될 수 있다.

제11조 [합작약정]

1. 계약에는 합작사업이나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개발청을 통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간의 합작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개정, 중단 또는 종료에 의하여 해저기구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2. 해저기구와 이러한 합작약정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이 부속서 제 13 조에 언급된 재정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개발청과 합작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부속서 제 13 조에 언급된 재정적 우대조치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작사업 지분의 한도내에서 제 13 조가 요구하는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개발청의 활동]

1. 제 153 조 제 2 항 (a)에 따라 개발청이 수행하는 심해저활동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해저기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규율된다.

2.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개발청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덧붙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재정조건]

1. 해저기구는 제 153 조 제 2 항 (b)에 언급된 주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제?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재정조건을 교섭함에 있어서 다음 목표를 지침으로 한다.

(a) 상업생산의 수익으로부터 해저기구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입 확보

(b) 심해저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유인

(c) 계약자의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균등한 의무 부담

(d) 계약자의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의 직원훈련,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과의 합작약정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균일하게 무차별적으로 계약자에게 제공

(e) 개발청과 제 153 조 제 2 항 (b)에 언급된 주체의 효과적인 심해저 광업의 종사

(f) 이 부속서 제 19 조에 따라 재검토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또는 합작사업에 관한 이 부속서 제 11 조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된 제 14 조에 의한 재정적 장려조치의 결과로서, 육상광물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자가 경쟁상 유리 하도록 인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

2. 계약의 형태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할 행정비용을 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한 신청당 미화 50 만달러로 한다. 수수료 금액은 발생한 행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수시로 검토된다. 해저기구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러한 행정비용이 고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저기구는 차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이행협정부속서 제 8 절 3 항 참조>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계약자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연간고정수수료 미화 100 만 달러를 지급한다. 제 151 조에 따른 생산인가 발급이 늦어져 상업생산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간 고정수수료는 면제된다. 계약자는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생산 부과금이나 연간고정수수료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계약자는 제 3 항에 따라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한다.

(a) 생산부과금만을 납부하는 것

(b)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하는 것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계약자가 생산부과금만을 지급함으로써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된 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시장가격의 백분률로 정하여진다.

(i) 상업생산 1 년부터 10 년까지 5 퍼센트

(ii) 상업생산 11 년부터 끝날 때까지 12 퍼센트

(b) 앞의 시장가치는 제 7 항과 제 8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광물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계약자가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함으로써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선택한 경우 이러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을 (b)에 따라 결정한 시장가치의 백분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i) 상업생산의 제 1 기 2 퍼센트

(ii) 상업생산의 제 2 기 4 퍼센트

(d)에 정의된 상업생산의 제 2 기에 4 퍼센트의 생산부과금을 지급한 결과 (m)에 정의된 어느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 15 퍼센트 미만으로 되는 경우 그 회계년도의 생산부과금은 4 퍼센트 대신 2 퍼센트가 된다.

(b) 앞의 시장가치는 제 7 항과 제 8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c) (i) 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으로부터 얻어지는 계약자의 순이익(이하 개발순이익이라 한다)의 일부로 한다.

(ii) 개발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다음 할증표에 따라 결정된다.

개발순이익의 배분	해저기구의 지분	
	상업생산 제 1 기	상업생산 제 2 기
0 퍼센트 이상 10 퍼센트 미만인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35 퍼센트	40 퍼센트
10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미만인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42.5 퍼센트	50 퍼센트
20 퍼센트 이상인 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	50 퍼센트	70 퍼센트

(d) (i) (a)와 (c)에 언급된 상업생산의 제 1 기는 상업생산의 제 1 차 회계연도에 시작되며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미회수부분에 대한 이자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연도에 끝난다. 개발비용이 발생하는 제 1 차 회계연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개발비용에서 그 해의 현금잉여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 후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전회 계년도말의 미회수 개발비용과 이에 대한 연 10 퍼센트의 이자와 그 회계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용의 합계로부터 그 회계연도의 계약자의 현금잉여를 뺀 비용과 같다. 미회수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첫 회계연도는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개발비용 중 미회수된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연도이다.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계약자의 현금잉여는 총수익으로부터 계약자의 작업비용과 (c)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ii) 상업생산의 제 2 기는 상업생산의 제 1 기가 끝난 다음 회계연도에 시작하여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e)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이익과,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광업 부분 개발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3 대 주요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개발순이익은 계약자의 순수익의 25 퍼센트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n)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4 대 주요 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망간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3 개 광물에 대하여 25 퍼센트 최저기준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적절한 최저기준을 각 경우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f)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광업비용과 (i)에 규정된 회수된 개발비용을 뺀 계약자의 총수익을 말한다

(g) (i)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제련금속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제련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 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

차에 따른 계약상 광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ii) (g)(i)와 (n) (iii)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나오는 반제련 상태의 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의 조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h)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i) (n)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생산능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또한 이러한 개발과 관련한 계약상 작업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업생산 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기계, 장비, 선박, 제련공장시설, 건설, 건물, 토지, 도로, 계약의 대상 지역의 개괄탐사와 탐사, 조사와 개발, 이자, 필요한 임차, 면허와 수수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ii) 작업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i)에 언급된 지출과 비슷한 지출

(i)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수익과 계약상 작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자본자산의 시장가치는 그 회계연도 중 계약자의 개발비용에서 뺀다

(j) (h)의 (i)과 (n)의 (iv)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전에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 비용은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10 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h)의 (ii)와 (n)의 (iv)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계약이 끝날때까지 완전하게 상각될 수 있도록 10 년 또는 10 년미만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k)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의 생산능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이용과 관련된 계약상 작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연간고정수수료나 생산부과금 중에서 더 많은 것, 임금, 급여, 피고용자 급부, 자재, 용역, 수송, 제련과 판매비용, 이자, 사용료, 해양환경보전 비용, 계약상 작업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와 관리비용 및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월 또는 소급되는 순작업손실을 포함한다. 순작업손실은 계약의 마지막

2 년간을 제외하고는 2 년 연속 이월될 수 있으며, 계약의 마지막 2 년간에는 순작업 손실이 그 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l)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제련금속과 반제련 상태의 금속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개발비용 중 계약의 대상 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하며 특히 신청수수료, 연간고정수수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괄탐사와 탐사의 비용과 조사 및 개발의 비용 중의 일부를 포함한다.

(m)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개발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업 비용의 개발비용은 광업부문에서의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비용으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n) 계약자가 광업에만 종사하는 경우

(i)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이익 전부를 말한다.

(ii)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f)에 정의된 바와 같다.

(iii) "계약자의 총이익"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 조업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iv)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h)의 (i)에 언급된 상업생산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과 (h)의 (ii)에 언급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한다.

(v)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k)에 언급된 계약자의 작업비용 가운데에서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말한다.

(vi)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계약자의 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지출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o)계약자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h), (k), (l) 및 (n)에 언급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기구가 기존의 상관행을 고려하여 이 부속서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부채자본비율과 이 비율이 합리적이라고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p) 이 호에 언급된 비용은 계약자의 조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나 이와 비슷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제 5 항과 제 6 항에 언급된 "제련금속"이라 함은 국제집하시장에서 관습적으로 교역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자신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관련 국제집하시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교역되지 아니하는 금속에 대하여 "제련금속"이라 함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에서 관습적으로 교역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b) 해저기구가 제 5 항 (b)와 제 6 항 (b)에 언급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양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단괴의 금속함유량, 제련회수율 및 그 밖의 관련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8.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국제집하시장이 제련광물, 복합금속단괴 및 단괴로부터 반제련상태로 된 금속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이 사용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해저기구가 계약자와 협의 후 제 9 항에 따라 앞의 생산품에 대한 공정가격을 결정한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입 및 모든 가격과 금액의 결정은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의 결과이어야 한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시장에서의 관련

거래를 고려하여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 결과인 것처럼 해저기구에 의하여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b) 이 항을 준수하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국제연합 다국적 기업위원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관한 전문가단체와 다른 국제기구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위하여 채택한 원칙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지침으로 하고, 또한 확실적이고 국제적으로 수락 가능한 회계 원칙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이행을 감사할 목적으로 해저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계약자가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지정한다.

10.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계약자는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 조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공한다.

11. 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입 및 모든 가격과 가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12. 제 5 항과 제 6 항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나 주요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시장가치의 제련금속으로서 이루어진다. 시장가치는 제 5 항 (b)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와 주요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일반적인 국제통화관행에 따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정의된다.

13. 이 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수수료, 비용, 경비, 수익 및 수입과 해저기구에 대한 계약자의 모든 재정상의 의무는 이를 기준년도와 비교한 불변가격으로 표시하여 조정한다.

14. 해저기구는 경제기획위원회와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확실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제 1 항에 언급된 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두 당사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자라도 제 188 조 제 2 항에 따라 분쟁을 구속력있는 상사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이전]

1. 조업자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사업계획의 조건에 따라 해저기구가 결정하는 간격으로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해저기구 주요기관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해저기구에 이전한다.
2.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이전된 자료 가운데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는 이 조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해저기구가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장비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개괄탐사자,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자가 해저기구에 이전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는 해저기구에 의하여 개발청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보지역에 관한 자료는 개발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이 개발청에 이전한 자료는 개발청에 의하여 해저기구에게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훈련계획]

계약자는 제 144 조 제 2 항에 따라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 인력의 실제적 훈련계획을 작성하며 이 훈련계획에는 이러한 인력이 계약의 대상으로 된 심해저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

해저기구는 제 11 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광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으로 된 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하며, 다른 어떠한 주체도 조업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자원을 동일한 지역에서 탐사하고 개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조업자는 제 153 조 제 6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제17조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1. 해저기구는 제 11 부에 언급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 160 조 제 2 항 (f)의 (ii)와 제 162 조 제 2 항 (o)의 (ii)에 따라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균일하게 적용한다.

(a) 심해저에서의 개괄탐사, 탐사 및 개발에 관한 행정절차

- (b) 조업
 - (i) 지역의 규모
 - (ii) 조업기간
 - (iii) 이 부속서 제 4 조 제 6 항 (iii)에 따른 보증을 포함한 이행요건
 - (iv) 자원의 종류
 - (v) 지역의 포기
 - (vi) 경과보고
 - (vii) 자료의 제출
 - (viii) 조업의 검사와 감독
 - (ix) 해양환경에서의 다른 활동에 의한 영향의 방지
 - (x) 계약자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이전
 - (xi) 제 144 조에 의한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이전과 개발도상국의 직접참여를 위한 절차
 - (xii) 조업의 안전, 자원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광업기준과 광업 관행
 - (xiii) 상업생산의 정의
 - (xiv) 신청자의 자격기준
- (c) 재정사항
 - (i) 비용과 회계에 관한 균일적이고 무차별적인 규칙과 감사인의 선정방법의 제정
 - (ii) 조업수익의 분배
 - (iii) 이 부속서 제 13 조에 규정된 장려조치
- (d) 제 151 조 제 10 항과 제 164 조 제 2 항 (iv)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의 시행

2.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는 다음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한다.

(a) 지역의 규모

해저기구는 탐사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결정한다. 탐사지역은 집중적인 탐사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지역의 2 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지역의 규모는 당시 해저광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상태와 그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에 따르고, 제 151 조와 양립하

는 명시된 생산 요건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보에 관한 이 부속서 제 8 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정한다. 지역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규모보다 크거나 작지 아니 하여야 한다.

(b) 조업기간

(i) 개발탐사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ii) 탐사는 특정지역에 대한 완전한 조사, 그 지역에 알맞는 채광장비의 설계와 건설, 광업과 제련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소형 및 중형 제련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iii) 개발기간은 광석의 고갈, 채광장비와 제련시설의 사용가능기간, 상업적 채산성을 고려하여 광업계획의 경제적인 존속기간과 관련되어야 한다. 개발기간은 그 지역에 있는 광물의 상업적 채취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어야 하며, 또한 상업적 규모의 광업과 제련설비를 건설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상업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개발기간은 해저기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에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가 갱신을 고려하는 때에, 그 사업계획의 조건을 수정할 기회를 해저기구에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단축한다.

(c) 이행요건

해저기구는 탐사단계의 기간중에 조업자가 정기적인 경비지출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비는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규모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해저기구가 설정한 시간적 제한내에 그 지역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려는 선의의 조업자가 지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비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업예정자의 조업의사를 해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지 아니한다. 해저기구는 탐사단계가 끝나고 개발단계가 시작된 후, 상업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기간을 확보한다. 이러한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탐사단계가 끝나고 개발단계가 시작한 후에야 대단위 광업과 제련설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기간은 탐사단계가 끝난 후 이러한 설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며, 또한 불가피한 건설계획상의 지연에 대

비하여 상당한 여유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상업생산이 이루어지면 해저기구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조업자에게 사업계획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업생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d) 자원의 종류

승인되는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자원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특히 다음의 특성에 중점을 둔다.

(i) 어떤 자원들은 비슷한 채광법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

(ii) 같은 지역에서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조업자들이 서로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점. 이 호의 규정은 해저기구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신청자에게 하나 이상의 종류의 자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 지역의 포기

조업자는 언제라도 사업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자신의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위약금을 물지 아니하고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f) 해양환경의 보호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또는 광구에서 채취된 광물을 광구에서 곧바로 선상 제련함으로서 직접 초래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해로운 영향이 시추, 준설, 표본채취 및 굴착으로부터 또는 퇴적물, 폐기물과 그 밖의 유출물의 처분, 투기 및 배출로부터 직접 나타나는 정도를 고려하여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g) 상업생산

조업자가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또는 장비나 공장설비를 시험할 목적으로 생산한다기보다는 대규모 생산을 주목적으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질을 생산하는 대규모 광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업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벌칙]

1. 계약에 바탕을 둔 계약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a) 해저기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기본적인 조건, 제?부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대하여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인 위반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활동한 경우

(b) 계약자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의 구속력있는 최종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 1 항 (a)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위반의 경우 또는 제 1 항 (a)에 따른 정지나 종료에 대신하여 해저기구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한 벌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제 162 조 제 2 항 (w)에 의한 다른 긴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자에게 제?부 제 5 절에 따라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를 완료할 합리적 기회가 부여될 때까지, 해저기구는 벌금, 정지 또는 종료와 관련된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1.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이 불공평하다고 보거나, 계약이나 제?부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제 153 조 제 3 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제20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계약에 바탕을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이전될 수 있다. 예정된 양수인이 모든 점에서 자격있는 신청자이고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이전에 의하여 이 부속서 제 6 조 제 3 항 (iii)에 따른 승인이 금지된 사업계획을 양수인이 가지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저기구는 이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 [적용법규]

1. 계약은 계약조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제?부와 이 협약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2. 해저기구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내린 최종결정은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집행력을 가진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계약자에게 제?부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국이 보증한 계약자나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 17 조 제 2 항 (f)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보다 엄격한 환경법규나 그 밖의 법규를 당사국이 적용하는 것은 제?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책임]

계약자는 자신의 조업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기구는 제 168 조 제 2 항에 의한 위반을 포함한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실제손해액에 상응하여야 한다.

제Ⅳ부속서 개발청(開發廳) 정관

제1조 [목적]

1. 개발청은 제?부 제 153 조 제 2 항 (a)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심해저로부터 채취한 광물의 수송·가공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개발청은 그 임무와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제 1 항에 따른 심해저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개발청은 이 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건전한 상업원칙에 부합되게 조업한다.

제2조 [해저기구와의 관계]

1. 제 170 조에 의거하여, 개발청은 총회의 일반정책과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 제 1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발청은 조업 수행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진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저기구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개발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개발청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책임의 한계]

이 부속서 제 11 조 제 3 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저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단지 회원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발청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구성]

개발청에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개발청의 임무 행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제 160 조 제 2 항 (c)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 15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이 충분히 고려된다.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개발청의 활성화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자격과 함께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성에 유의한다.
2. 위원의 임기는 4 년이며 재선될 수 있고, 회원자격은 윤번제원칙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3.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직이 공석이 된 경우, 총회는 제 160 조 제 2 항 (c)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선출한다.

4.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행동한다.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그 밖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해저기구의 각 회원국은 위원의 독립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삼가야 한다.
5. 위원은 개발청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다. 급여의 수준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6.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개발청의 주사무소에서 활동하며, 개발청이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2/3 로 한다.
8. 각 위원은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모든 문제는 위원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9.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관리위원회는 개발청의 조업을 지휘한다. 관리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라 아래 권한을 포함하여 개발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 (a) 위원 중에서 의장의 선출
- (b) 절차규칙의 채택
- (c) 제 153 조 제 3 항과 제 162 조 제 2 항 (j)에 따라 공식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 (d) 제 170 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정표의 입안
- (e) 제 151 조 제 2 항부터 제 7 항까지에 따른 생산인가 신청준비 및 이사회 제출
- (f) 제Ⅲ부속서 제 5 조 제 3 항 (a), (c) 및 (d)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기술의 획득에 관한 교섭의 허가와 이러한 교섭결과의 승인
- (g) 제Ⅲ부속서 제 9 조와 제 11 조에 규정된 합작사업과 그 밖의 형태의 합작협정에 관한 조건의 설정과 이에 관한 교섭의 허가 및 이러한 교섭결과의 승인

- (h) 제 160 조 제 2 항 (f) 및 이 부속서 제 10 조에 따라 개발청의 순수입 중에서 유보분으로 보유할 부분의 이사회에의 권고
- (i) 개발청 연간예산의 승인
- (j) 이 부속서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조달 승인
- (k) 이 부속서 제 9 조에 따른 연례보고서 이사회 제출
- (l) 총회 승인을 위한 개발청 직원의 조직, 관리, 임명 및 해고에 관한 규칙 초안의 이사회 제출 및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위한 규정 채택
- (m) 이 부속서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결정된 담보물이나 그 밖의 담보의 제공
- (n) 이 부속서 제 13 조에 따른 소송제기, 약정체결, 거래 및 그 밖의 조치시행
- (o)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재량권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한의 사무국장 및 위원회에 위임

제7조 [개발청의 사무국장과 직원]

1. 총회는 이사회의 권고와 관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무국장을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재선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개발청의 법률상 대표자이자 또한 행정상의 장으로서 개발청의 조업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또한 이 부속서 제 6 조 제 1 항에 언급된 규칙과 규정에 따라 개발청 직원의 편성, 관리, 임명 및 해고에 관한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투표권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며, 총회와 이사회가 개발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을 때 투표권없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개발청 직원의 채용, 고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고수준의 능률과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기초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개발청 외부의 어떠한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과 직원은 개발청에만 책임을 지는 개발청의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각 당사국은 사무국

장과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5. 제 168 조 제 2 항에 언급된 책임은 개발청의 직원에 대하여동등하게 적용된다.

제8조 [소재지]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발청은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 다른 사무소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서와 재무제표]

1. 개발청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사를 위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비롯한 연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며, 적절한 기간을 두고 재정상태에 관한 개요서와 작업의 결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개발청은 연례보고서와 개발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3. 이 조에 언급된 모든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해저기구의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제10조 [순수익의 배분]

1. 제 3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발청은 해저기구에 대하여 제III부속서 제 13 조에 따른 지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급부를 한다.

2. 총회는 관리이사회에 권고에 따라 개발청의 순수입 중에서 개발청의 유보분으로 보유할 지분을 결정한다. 잔여분은 해저기구에 양도된다.

3. 개발청이 상업생산을 개시한 후 개발청의 자립에 필요한 10 년을 넘지 아니하는 초기기간 중 총회는 개발청에 대하여 제 1 항에 언급된 지급을 면제하며, 개발청 순수입 전체를 유보분으로 한다.

제11조 [재정]

1. 개발청의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제 173 조 제 2 항 (b)에 따라 해저기구로부터 받은 금액

(b) 해저기구의 활동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제공하는 자발적인 기부금

(c)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라 개발청이 차입한 금액

(d) 조업에 의한 개발청의 수입

(e) 개발청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가능한한 조속히 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청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금

2. (a) 개발청은 자금을 차입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담보물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개발청이 어느 한 당사국의 재정시장에서 또는 그 통화로서 개발청의 채권을 공매하는 경우, 사전에 그 당사국의 승인을 받는다. 총차입액에 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b) 당사국은 개발청이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차관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개발청은 1 개광구의 탐사와 개발, 그 광구로부터 채취된 광물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니켈·구리·코발트 및 망간의 수송, 가공 및 판매, 개발청의 초기 행정경비의 총당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는다. 준비위원회는 그 자금의 액수와 그 조정을 위한 기준과 요인을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초안에 포함시킨다.

(b) 모든 당사국은 평가시점에 적용되는 국제연합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비율로서,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당사국을 고려하여 조정된 분담금비율에 따라 장기 무이자차관 방식으로 (a)에 언급된 자금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저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의 나머지 반을 조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해저기구의 채무는 위의 비율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 의하여 보증된다.

(c) 당사국의 재정적 기부금의 합계가 (a)에 따라 해저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제 1 회기에서 부족의 정도를 검토하며 총의 방식으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할 경우 (a)와 (b)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준비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고려한다.

(d) (i) 각 당사국은 이 협약 발효 후 60 일 이내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30 일 이내의 기간 중 보다 늦은 일자 이내에, 취소가 불가능한 양도금지 무이자 약속어음으로, (b)의 규정에 따른 무이자 차관에 관한 그 당사국의 분담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개발청에 기탁한다.

- (ii)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후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또는 적절한 기간을 두고 행정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제 107 조와 이 부속서 제 12 조에 따라 개발청이 수행하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액수와 시간계획표를 준비한다.
- (iii) 개발청은 그 후 즉시 이러한 지출에 필요한 자금 중 제 2 항 (b)에 따른 각 분담금을 해저기구를 통하여 당사국에 통고한다. 개발청은 무이자 차관에 관하여 계획표에 규정된 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액수의 약속어음을 환금한다.
- (iv) 당사국은 통고를 받은 후 (b)에 따른 개발청을 위한 채무보증에 관한 자국의 분담분을 제공한다.
- (e) (i) 개발청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국은 (b)에 언급된 비율에 따라 제공된 채무보증에 더하여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 (ii) 채무보증에 대신하여 당사국은 보증책임을 질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발청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 (f) 이자부 차관은 무이자 차관보다 먼저 상환한다. 무이자 차관은 이사회의 권고와 관리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총회가 채택한 계획표에 따라 상환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는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를 지침으로 삼으며, 이러한 관련 규칙, 규정 및 절차는 해저기구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 특히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 (g) 개발청에 제공되는 자금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화이거나 주요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화는 국제금융상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다.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국도 해저기구에 의한 이러한 자금의 보유, 사용 또는 교환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 (h) "채무보증"이라 함은 채권자가 개발청의 채무불이행을 당사국에 통고 한 후 당사국이 개발청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한 개발청의 재정적 채무를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의 지급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4. 개발청의 자금, 자산 및 경비는 해저기구의 자금, 자산 및 경비와 별도로 유지된다. 이 조의 규정은 시설, 직원 및 용역에 관하여 개발청이 해저기구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개발청 또는 해저기구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여 지급한 행정경비의 상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연간재무제표를 포함한 개발청의 기록, 장부 및 회계서류는 이사회가 임명한 독립된 감사가 매년 감사한다.

제12조 [조업]

1. 개발청은 제 170 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제 153 조 제 3 항에 따른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 사업계획서와 법률·기술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승인을 위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포함한다.

2. 개발청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제 1 항에 언급된 공식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계획을 집행한다.

3. (a) 개발청은 조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청은 입찰을 실시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시기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한다.

(b)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입찰신청이 한건 이상인 경우 계약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i)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조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고려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할 원칙

(ii)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물품과 용역에 부여될 우선권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지침

(c) 관리위원회는 개발청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응찰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4. 개발청은 개발청이 생산한 모든 광물과 가공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5. 개발청은 생산물을 차별없이 판매한다. 개발청은 비영리적인 할인을 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개발청에 부여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개발청은 업무에 부수되는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7. 개발청은 어떠한 당사국의 정치문제에도 간섭할 수 없으며, 또한 개발청의 결정에 있어서도 관계당사국의 정치적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발청의 결정은 오로지 상업적 성격만이 관련되며, 이러한 고려는 이 부속서 제 1 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진다.

제13조 [법적지위, 특권·면제]

1. 개발청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청에게 이 조에 규정된 지위, 특권 및 면제를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청과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임무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a)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포함한 계약, 합작약정 또는 그 밖의 약정 체결

(b)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임대차, 보유 및 처분

(c)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

3. (a) 개발청에 대한 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권한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i) 개발청이 사무소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ii) 개발청이 소송에 관한 송달이나 통고를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한 당사국

(iii) 개발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국

(iv) 개발청이 담보를 제공한 당사국

(v) 개발청이 그 밖의 방법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한 당사국

(b)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개발청에 대한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 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a)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징발, 몰수, 수용으로부터 그리고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b)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성격의 차별적인 제한, 규제, 관리 또는 동결조치로부터 면제된다.

(c) 개발청과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나 영역의 법령을 존중한다.

(d)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면제를 개발청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 특권 및 면제는 유사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청에 부여된다. 당사국이 개발도상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의 상업적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개발청은 이와 유사하게 우선적으로 특권을 향유한다.

(e) 당사국은 다른 상업적 주체에게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개발청에 대하여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5. 개발청은 개발청의 사무소와 시설이 위치한 접수국이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 받기 위한 교섭을 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을 자국법률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청에 통보한다.

7. 개발청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 1 항에 언급된 특별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스스로 결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다.

제 V 부속서 조 정

제1절 제 X V 부 제1절에 따른 조정절차

제1조 [절차의 개시]

분쟁당사자가 제 284 조에 따라 분쟁을 이 절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자는 다른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고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조 [조정위원 명부]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조정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한다. 모든 당사국은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4 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명부에 기재된다. 이렇게 등재된 명부에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조정위원이 4 인 미만일 때에는 언제나라도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이름은 지명을 행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남는다. 다만, 그 위원은 자신이 임명된 조정위원회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조정위원회에 재직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g)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정위원회는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되도록이면 제 2 조에 언급된 조정위원 명부로부터 2 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그 중 1 인의 조정위원은 자국민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임은 이 부속서 제 1 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 1 조에 언급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1 일 이 내에 (b)에 규정된 방식으로 2 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기간 만료일부 터 1 주일 이내에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함으로써 절차를 끝내거나 또는 (e)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조정위원 4 인 모두가 선임된 후 30 일 이내에 4 인의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될 다섯번째의 위원을 이 부속서 제 2 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e)에 따라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 (c) 또는 (d)에 따른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 2 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f) 공석은 최초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보충한다.

(g)같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의한 둘 이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 2 인을 함께 선임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개별적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h)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한 (a)부터 (f)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 [절차]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아래 어느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절차문제, 보고 및 권고에 관한 결정은 위원들의 과반수에 의한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5조 [우호적 해결]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조치에 유의하도록 당사자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주장과 반론을 검토하며 우호적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안을 한다.

제7조 [보고]

1. 조정위원회는 구성후 12 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실문제나 법적문제에 대한 결론과 위원회가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보는 권고를 기록한다.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위원회의 결론이나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8조 [종결]

조정절차는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한 보고서상의 권고를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 종결된다.

제9조 [수수료와 경비]

위원회의 수수료와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조정절차 수정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분쟁당사자는 그 분쟁에만 적용되는 합의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어느 조항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제XV부 제3절에 따른 조정절차에의 강제회부

제11조 [절차의 개시]

1. 제XV부 제3절에 따라 이 절에 의한 조정에 회부한 어느 한 분쟁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절차를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이러한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불응]

절차개시 통고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쟁당사자가 회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권한]

이 절에 따라 행동하는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제1절의 적용]

이 부속서 제1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VI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1조 [총칙]

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협약과 이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한자자유시인 함부르크로 한다.
3. 재판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제?부와 제X V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절 재판소의 조직

제2조 [구성]

1. 재판소는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며 해양법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 가운데에서 선출된 21 인의 독립적 재판관의 일단으로 구성된다.
2.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 [재판관의 자격]

1. 2 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재판소에서 재판관자격의 목적상 2 개국 이상의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일상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2. 국제연합총회가 설정한 각 지리적 그룹에서 적어도 3 인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된다.

제4조 [지명과 선거]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 제 2 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2 인 이내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재판관은 이렇게 지명된 사람의 명부에서 선출된다.
2. 제 1 차 선거의 경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다음 선거부터는 재판소서기가, 적어도 선거일 3 개월 전에 당사국에게 2 개월 이내에 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과 서기는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명부를 그 지명을 행한 국가를 부기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각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제 7 일 이전에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3. 제 1 차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 실시된다.

4. 재판관은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 1 차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제 2 차 이후의 선거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되는 당사국회의에서 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한 사람으로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2/3 이상의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출한다. 다만,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2/3 이상의 다수에는 전체당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임기]

1. 재판관의 임기는 9 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 1 차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7 인의 임기는 3 년후에 끝나며 다른 7 인의 임기는 6 년후에 끝난다.
2. 임기가 제 1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의 3 년과 6 년에 끝나는 재판관은 제 1 차 선거 직후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3. 재판관은 후임자가 총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재판관은 교체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교체 이전에 착수한 소송절차를 끝맺어야 한다.
4.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직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사직서가 접수되는 즉시 공석이 생긴다.

제6조 [공석]

1. 공석은 다음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제 1 차 선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워진다. 서기는 공석이 생긴 후 1 개월 이내에 이 부속서 제 4 조에 규정된 요청서를 발송하며, 선거일은 당사국과 협의후 재판소장이 정한다.
2.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재판관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재직한다.

제7조 [직무상 금지활동]

1. 재판관은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이나 해저자원의 탐사나 개발 또는 해양이나 해저의 그 밖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기업의 활동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가지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8조 [제척과 기피]

1. 재판관은 과거에 어느 한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국내재판소나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또는 다른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한 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2. 재판관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특정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재판소장에게 알린다.
3. 재판소장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어느 재판관이 특정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그 재판관에게 알린다.
4.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9조 [재판관의 자격상실]

어느 재판관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정할 경우 재판소장은 그 자리가 공석이라고 선언한다.

제10조 [특권과 면제]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제11조 [선서]

모든 재판관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공개 법정에서 선서한다.

제12조 [재판소장, 부소장 및 서기]

1. 재판소는 3년 임기의 소장과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재판소서기를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재판소장과 서기는 재판소의 소재지에 거주한다.

제13조 [정족수]

1. 참여가능한 모든 재판관은 재판에 참가하며, 재판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11인이다.
2. 재판소는 이 부속서 제 17 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 제 14 조와 제 15 조에 규정된 재판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할 재판관을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한다. 다만, 이 부속서 제 14 조가 적용되거나 당사자가 이 부속서 제 15 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해저분쟁재판부]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부속서 제 4 절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다. 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 권한 및 임무는 제?부 제 5 절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15조 [특별부]

1. 재판소는 특정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 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판소에 회부된 특정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재판정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5 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정을 매년 구성한다. 특정한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재판관과 교대하기 위하여 2 인의 재판관이 선정된다.
4.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분쟁은 이 조에서 규정된 재판정에 의하여 심리되고 결정된다.
5. 이 조와 이 부속서 제 14 조에 규정된 재판정이 내린 판결은 재판소가 내린 것으로 본다.

제16조 [재판소의 규칙]

재판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특히 재판소는 절차규칙을 정한다.

제17조 [재판관의 국적]

1.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어느 한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른 당사자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1 인을 선정할 수 있다.
3.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1 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는 이 부속서 제 14 조와 제 15 조에 언급된 재판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재판소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후 재판정을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서 필요한 인원의 재판관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한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5.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앞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을 한 당사자로 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6. 제 2 항,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은 이 부속서 제 2 조, 제 8 조 및 제 11 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과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제18조 [재판관의 보수]

1. 선출된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으며, 그가 직무를 행하는 각일에 대한 직무수당을 받는다. 다만,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총액은 그의 연봉을 넘지 아니한다.

2. 재판소장은 특별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 활동하는 각일에 대한 특별수당을 받는다.

4. 이 부속서 제 17 조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는 각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5. 봉급, 수당 및 보수는 재판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수시로 결정되며, 재판관의 임기중 감액되지 아니한다.

6. 재판소서기의 연봉은 재판소의 제안으로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다.

7.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는 규정에는 재판소의 재판관과 서기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조건과, 또한 이들에 대한 여행경비환불조건을 결정한다.

8. 봉급, 수당 및 보수는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9조 [재판소의 경비]

1. 재판소의 경비는 당사국회의가 결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당사국과 해저기구가 부담한다.

2. 당사국이나 해저기구가 아닌 주체가 재판소에 회부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경비로 부담할 금액을 결정한다.

제2절 권 한

제20조 [재판소의 이용]

1. 재판소는 당사국에게 개방된다.
2. 재판소는 제7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경우이거나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는 다른 협정에 따라서 회부된 사건의 경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게도 개방된다.

제21조 [관할권]

재판소의 관할권은 이 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 및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모든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제22조 [다른 협정에 따른 분쟁의 회부]

이 협약이 다루는 내용과 관련하여 발효중인 조약이나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약이나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3조 [적용법규]

재판소는 모든 분쟁과 신청을 제 293 조에 따라 재판한다.

제3절 절 차

제24조 [소송의 제기]

1.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경우에 따라 재판소서기에게 특별한 합의를 통고하거나 서면신청을 제출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와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서기는 특별한 합의나 신청을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고한다.
3. 서기는 또한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제25조 [잠정조치]

1. 제 290 조에 따라 재판소와 해저분쟁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족수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인원의 재판관이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조치는 이 부속서 제 15 조 제 3 항에 따라 구성되는 약식절차 재판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부속서 제 15 조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정조치는 분쟁당

사자의 요청에 따라 채택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재판소에 의하여 재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다.

제26조 [심리]

1. 심리는 재판소장이, 재판소장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부소장이 관할한다. 재판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선임재판관이 주재한다.
2. 심리는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거나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로 한다.

제27조 [사건의 진행]

재판소는 사건진행에 관한 명령을 발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종결하여야 할 형식과 시기를 결정하며, 또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8조 [궐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29조 [결정방식]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이나 소장대행 재판관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0조 [판결]

1.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가 제시된다.
2. 판결문에는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포함된다.
3. 판결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재판관이라도 개별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판결에는 재판소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은 분쟁당사자에게 적절하게 통지되고 공개 법정에서 낭독된다.

제31조 [소송참가 요청]

1. 당사국이 어느 분쟁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자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재판소에 소송참가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소송참가 요청이 허용되는 경우, 분쟁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이 당사국의 소송참가에 관계된 사항과 관련을 가지는 범위에서만 소송에 참가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32조 [해석·적용문제에 대한 소송참가권]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서기는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즉시 통고한다.
2. 이 부속서 제 21 조나 제 22 조에 따라 국제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재판소서기는 그 국제협정의 모든 당사국에게 이를 통고한다.
3. 제 1 항과 제 2 항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는 소송참가권을 가진다. 이러한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판결에 의한 해석은 이러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33조 [결정의 종국성과 구속력]

1. 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결정은 특정한 분쟁의 당사자간 이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결정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는 이를 해석한다.

제34조 [비용]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당사자는 각기 자체비용을 부담한다.

제4절 해저분쟁재판부

제35조 [구성]

1. 이 부속서 제 14 조에 규정된 해저분쟁재판부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자신들 가운데에서 다수결로 뽑은 11 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선정에 있어서는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저기구의 총회는 이와 관련된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3.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은 3 년마다 선정되고 1 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해저분쟁재판부는 그 재판관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선출하며, 재판장은 선정된 해저분쟁재판부가 존속하는 동안 재직한다.

5. 어떠한 소송절차가 해저분쟁재판소가 존속하는 3 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해저분쟁재판부의 본래 구성원이 그 절차를 완료한다.
6. 해저분쟁재판부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재판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직할 후임 재판관을 재판소 재판관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7. 해저분쟁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7 인으로 한다.

제36조 [특별재판정]

1. 해저분쟁재판부는 제 188 조 제 1 항 (b)에 따라 회부된 특정분쟁을 다루기 위하여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3 인으로 특별재판정을구성한다. 특별재판정의 구성은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해저분쟁재판부가 결정한다.
2. 당사자가 특별재판정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분쟁당사자는 재판관 1 인씩을 선임하고 제 3 의 재판관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한다.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당사자가 재판관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해저분쟁 재판부의 재판장은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 가운데에서 재판관을 선임한다.
3. 특별재판정의 재판관은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제37조 [이용]

해저분쟁재판부는 제?부 제 5 절에 규정된 당사국, 해저기구 및 그 밖의 주체에 대하여 개방된다.

제38조 [적용법규]

해저분쟁재판부는 이 협약 제 293 조와 함께 다음을 적용한다.

- (a) 이 협약에 따라 해저기구가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절차
- (b) 심해저활동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계약의 조건

제39조 [해저분쟁재판부 결정의 집행]

해저분쟁재판부의 결정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제40조 [이 부속서 다른 절의 적용]

1. 이 절의 규정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이 부속서 다른 절은 해저분쟁재판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가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의 절차에 관한 이 부속서의 규정을 스스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안에서 그 지침으로 한다.

제5절 개 정

제41조 [개정]

1. 이 부속서 제 4 절의 개정 이외의 이 부속서의 개정은 제 313 조에 따라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총의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2. 제 4 절의 개정은 제 314 조에 의하여서만 채택될 수 있다.
3.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국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제안할 수 있다.

제Ⅵ부속서 중재재판

제1조 [소송의 제기]

제XV부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분쟁을 이 부속서에서 규정된 중재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한 이유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2조 [중재재판관 명부]

1. 중재재판관 명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유지한다. 모든 당사국은 해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는 4 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 기재한다.
2. 당사국이 이렇게 구성된 명부에 지명한 중재재판관이 4 명 미만인 경우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명을 할 수 있다.
3. 중재재판관 이름은 지명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다만, 그 중재재판관은 자신이 선임된 중재재판소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중재재판소에 재직한다.

제3조 [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g)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중재재판소는 5 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가능한한 이 부속서 제 2 조에 언급된 명부로부터 1 인을 선임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 1 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 (c) 분쟁의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 1 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가능한한 명부안에서 1 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 주일 이내에 (e)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 (d) 다른 3 인의 중재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임한다. 가능한한 그들은 명부안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 3 국 국민이어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이 중재재판관 3 인 가운데에서 중재재판소소장을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 1 조

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1 인 이상의 중재재판관 또는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남은 재판관의 임명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e)에 따라 이루어진다.

(e)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나 제 3 국에 의하여 (c) 또는 (d)에 따른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이 호에 따라 행동할 수 없거나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선임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출정가능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다음 연장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호에 언급된 요청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 2 조에 언급된 명부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재판관은 서로 다른 국적이어야 하며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그 영토에 일상적으로 거주 하거나 또는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최초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보충된다.

(g)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재판관 1 인을 공동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 1 인을 선임한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임명한 중재재판관의 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는 중재재판관 인원보다 항상 1 인이 적어야 한다

(h)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가능한한 최대한 적용된다.

제4조 [중재재판소의 임무]

이 부속서 제 3 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이 부속서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5조 [절차]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각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입장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6조 [분쟁당사국의 의무]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업무에 협조하며 자국법에 따라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다음을 행한다.

(a) 모든 관련문서, 시설 및 정보를 중재재판소에 제공한다.

(b)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재판소가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이 관계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경비]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관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8조 [결정방식]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중재재판관 과반수 미만의 결석 또는 기권은 중재재판소가 결정에 이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결석재판]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리도록 중재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절차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가 그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청구가 사실상으로 또한 법률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조 [판정]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분쟁의 중요사항에 국한되며 판정의 기초가 된 이유를 제시한다. 판정에는 이에 참여한 중재재판관의 이름과 판정일자가 포함된다. 중재재판관은 판정에 개별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 [판정의 종국성]

분쟁당사자가 미리 상소절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는 판정을 준수한다.

제12조 [판정의 해석 또는 집행]

1.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판정의 해석이나 집행방법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재판소내의 공석은 중재재판관을 선임하기 위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2. 이러한 분쟁은 모든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 287 조에 따라 다른 재판소나 재판정에 회부될 수 있다.

제13조 [당사국 이외의 주체에 대한 적용]

이 부속서의 규정은 당사국 이외의 주체와 관련된 분쟁에 준용한다.

제 VIII 부속서 특별중재재판

제1조 [소송절차의 개시]

제 X V 부의 규정에 따라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과학조사 및 (4)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써 그 분쟁을 이 부속서에 규정된 특별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2조 [전문가명부]

1.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과학조사 및 (4)선박에 의한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의 각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명부가 작성되고 유지된다.
2. 전문가명부는 어업분야에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분야에서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해양과학조사분야에서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항행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또는 이러한 기구, 계획,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각각 그 임무를 위임받은 적절한 관련보조기관이 작성하고 유지한다.
3.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의 법적·과학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권위가 확립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공정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명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2 인을 각 분야마다 지명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지명된 사람의 이름은 적절한 명부에 기재된다.
4. 이렇게 기재된 명부에 당사국이 지명한 전문가가 2 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5. 전문가의 이름은 지명한 당사국이 철회할 때까지 명부에 유지된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는 자신이 선임된 특별중재재판소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특별중재재판소에 재직한다.

제3조 [특별중재재판소의 구성]

이 부속서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g)에 따라 특별중재재판소는 5 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이 부속서 제 2 조에 언급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 인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 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 1 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 1 조에 규정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될 수 있으면 분쟁사항과 관련된 적절한 명부로부터 2 인 이상의 중재관을 선임하며 그 중 1 인은 자국민으로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이러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 주일 이내에 (e)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분쟁당사자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될 수 있으면 적절한 명부에서 선출한 제 3 국인이어야 하는 특별중재재판소 소장을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 1 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선임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e)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은 전기 30 일 기간이 끝난 후 2 주일 이내에 행한다.

(e)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나 제 3 국에 의하여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c)와 (d)에 따른 요청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필요한 선임을 한다. 이 호에 규정된 선임은 분쟁당사자와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 2 조에 언급된 적절한 전문가명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관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며, 분쟁당사자를 위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영토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최초방식에 따라 채워진다.

(g)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2 인의 중재관을 선임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관 1 인을 선임한다.

(h) 셋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가능한한 (a)에서 (f)까지의 규정이 최대한 적용된다.

제4조 [총칙]

제Ⅶ부속서 제 4 조부터 제 12 조까지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중재절차에 준용한다.

제5조 [사실심사]

1.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4)선박으로 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한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부속서 제 3 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 1 항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중재재판소의 사실심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3. 모든 분쟁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한 경우, 특별중재재판소는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4. 제 2 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제 IX 부속서 국제기구의 참여

제1조 [용어의 사용]

제 305 조 및 이 부속서에서 "국제기구"라 함은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간 기구로서 그 회원국이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조약을 체결할 권한 포함)에 관하여 권한을 이양한 기구를 말한다.

제2조 [서명]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 협약의 서명국인 경우, 이 협약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서명할 때에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임과 함께 서명국인 회원국에 의하여 그 기구에 권한이 이양된 사항과 그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히는 선언을 한다.

제3조 [공식확인과 가입]

1.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2. 국제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이 부속서 제 4 조와 제 5 조가 요구하는 약속과 선언을 포함한다.

제4조 [참여범위와 권리의무]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그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수락한다는 약속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 5 조에 언급된 선언, 정보의 제공 또는 통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3. 이러한 국제기구는 당사자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권한을 이양한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이 본래 이 협약상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이양한 권한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4. 이러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도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달리 권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의 의사결정권을 비롯한 대표권의 확대는 초래되지 아니한다.
5. 이러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기구의 회원국에게 이 협약에 의한 권리를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에 의한 국제기구의 의무와 그 국제기구를 설립한 협정에 의하거나 그 협정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의무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의무가 우선한다.

제5조 [선언, 통고 및 정보의 제공]

1.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이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힌 선언을 포함한다

2.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시점 또는 그 국제기구가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시점중에서 더 늦은 시점에,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자국이 그 국제기구에게 권한을 이양한 사항을 밝히는 선언을 행한다.

3.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이 조에 따라 스스로 특별히 선언, 통고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4.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은 권한의 새로운 이양을 포함하여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선언에 밝혀진 명시적인 권한의 관한 어떠한 변화도 이를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신속히 통고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와 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발생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국제기구와 회원국 가운데 어떠한 주체가 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선언, 정보의 통고와 제공에는 이양된 권한의 성격과 범위를 밝힌다.

제 6 조 [책임]

1. 이 부속서 제 5 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인 국제기구 회원국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서로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을 진다.

제7조 [분쟁해결]

1. 국제기구는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선언서를 통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 287 조 제 1 항 (a), (c) 또는 (d)에 규정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제 X V 부는 이 협약 당사자간의 분쟁으로서 그 당사자의 하나 이상이 국제기구의 회원인 경우에 준용한다.
3. 국제기구 및 1 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분쟁에 있어서 공동당사자이거나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쟁당사자인 경우,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국이 제 287 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만을 선택한 경우,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 VII 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 X VII 부의 적용]

제 X VII 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준용한다.

- (a)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제 308 조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 되지 아니한다.
- (b) (i)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제 312 조부터 제 315 조까지의 준용에 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ii) 개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부속서 제 5 조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 제 316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국인 각 회원국의 비준서나 가입서로 본다.
(iii)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다른 모든 개정에 관한 제 316 조 제 1 항과 제 2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 (c) (i)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 제 1 조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한, 제 317 조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없다.

(ii)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모두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 제 1 조에 명시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즉시 발효한다.